

기초연구 2004-05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과 활용에 관한 연구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과 활용에 관한 연구

연구기관명 : 미술인회의 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박신의(경희대학교 교수)

참여연구원 : 김성원(동덕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윤태건(카이스갤러리 디렉터)

하계운(단구대학교 겸임교수)

연구 조원 : 류수진, 최귀엽, 김미옥

연구 요약문

미술시장의 3대 구성 요소로 크게 생산자인 작가, 중개자인 화상, 소비자인 컬렉터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한국 미술시장은 주로 상업화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미술시장의 개념과 규모를 지나치게 화랑에 의존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화랑 이외의 다른 미술품 구입 경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러한 미술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는 2004년 6월 '새 예술정책'으로 '공공부문의 미술품 활용 증대'를 목표로 미술은행(Art Bank)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미술품 구입을 통한 창작 지원과 더불어 이를 활용하여 딱딱해 보이는 공공기관을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 지역의 열악한 미술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과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본론의 첫 번째 장에서는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미술품 구입, 소장, 관리시스템의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 분석하였다. 설문항은 크게 미술품 구입현황, 일반현황, 소장품 현황 등 세 가지 항목을 목적으로 제작하였다. 미술품 구입현황에서는 미술품 구입을 위한 예산 편성 여부, 미술품 구입 예산 비율, 미술품 구입사례, 정기적인 미술품 구입 여부, 미술품 구입경로, 구입 미술품의 유형, 지역작가 작품 구입의 여부를 물었다. 일반 현황에서는 미술품 구입시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만약 있다면 부서명과 담당자명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설문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미술품에 대한 인식 부족의 개선, 이를 통한 미술품 구입을 위한 예산 설정 및 증대,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입 경로 컨설팅 등 다채로운 쟁점 및 전망을 할 수 있었다.

본론의 두 번째 장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새 예술정책의 미술은행(Art Bank) 제도의 도입배경 및 세부 시행 방안 그리고 공공기관 대민서비스 공간개선의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이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술은행제도에 대한 국내외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국내의 경우, 기업문화마케팅 차원에서의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 하나은행과 더불어 국가기관인 카이스트(KAIST)와 외교통상부의 미술품 구입 및 대여 사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해외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영국의 국립예술품수집위원회(National Art Collection), 영국예술진흥위원회(Arts Council),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프랑스의 국립현대미술진흥기금(FNAC), 지역현대미술진흥기금(FRAC), 캐나다의 Canada Council of Art Bank, 미국 알래스카 주정부의 Art Bank, 워싱턴 D.C. 지역 예술가 지원프로그램, 그리고 호주의 Australian Art Bank가 논의의 대상이었는데, 이들 사례들을 통해 몇몇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론의 마지막 장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맞추었다. 이 장은 크게 두 개의 절로 나누어 설명되는데, 현실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기적 전망과 향후 궁극적인 미술은행제도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장기적 전망에 따른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현재 경기문화재단이 기획 및 관리의 주체가 되어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을 공식화하도록 하는 방안에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는 가칭 경기도 현대미술진흥기금이라는 조직체의 형태로 운영할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세부 계획

이번 연구를 통해 조사된 지자체의 구입 미술작품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 자료는 향후 지자체 내 공공기관에서의 좀 더 규모 있는 예산 책정 및 집행과 더불어 효율적인 미술품 관리시스템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고립화되어 있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공공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작품 구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직·간접적인 지역 미술활동 장려의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구축은 작가들에게 창작의지를 고취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이며,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할 경우 경기도민의 문화환경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 례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기대효과	3
3. 연구의 범위	4
4. 연구의 일정	6
II. 경기도지역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 실태 및 현황	7
1. 실태조사의 목적과 방법	7
1) 실태조사의 목적	7
2) 표본조사기관의 범위	7
3) 표본조사 방법	8
4) 설문조사 항목	9
2. 표본조사 대상기관의 수	10
3.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13
1) 미술구입과 관련한 예산편성 여부	13
2) 미술품 구입 예산비용	15
3) 미술품 구입 사례	17
4) 정기적인 미술품 구입 여부	19
5) 담당부서 및 담당자 유무	21
6) 미술품의 구입 경로	23
7) 소장품 보유 수량	26
8) 미술품 소장 장소	28

11) 지역작가 작품 구입 여부 34

4. 쟁점 및 전망 36

Ⅲ. 새 예술정책의 미술은행(Art Bank)제도 및 사례연구 39

1. 새 예술정책의 미술은행(Art Bank) 제도 39

 1) 미술은행(Art Bank) 제도 도입 배경 39

 2) 미술은행(Art Bank) 제도 세부시행 방안 42

 3) 공공기관 대민서비스 공간 개선 시범사업 44

 4) 2005년 사업을 위한 시행방안 46

 5) 문제점 46

2. 국내 사례 50

 1) 하나은행 51

 2) KAIST 52

 3) 외교통상부 55

3. 해외 사례 59

 1) 영 국 60

 2) 프랑스 64

 3) 캐나다 75

 4) 미 국 82

 5) 호 주 82

4. 시사점 84

Ⅳ. 경기도내 공공기관의 미술품구입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 85

1. 단기적 전망에 따른 방안 85

 1) 사업의 성격과 목적 85

 2)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개발 및 구성 87

4) 조직 및 운영방안(안)	89
5) 구입 및 활용을 위한 운영(안)	92
2. 장기적 전망에 따른 방안 : (가칭) 경기도지역 현대미술진흥기금	99
1) 사업의 성격과 목적	99
2) 조직 및 운영방안(안)	97
V. 정책적 함의 및 전망	107
1. 경기도 내 미술시장의 활성화	107
2. 작가지원을 위한 창작 고취	108
3. 미술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환경 조성	108
참고문헌	110
부 록	114
부 록 1. 외교통상부 미술품 관리 규정	115
부 록 2. 외교통상부 미술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121
부 록 3. 정부미술품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124
부 록 4. 정부미술품 관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130
부 록 5. 2004 경기도 내 공공기관 미술품 구입 현황 및 실태조사	133

표 목 차

<표 1> 연구의 일정	6
<표 2> 설문조사 항목	9
<표 3> 지역별 공공기관 및 표본의 수	12
<표 4> 미술품 예산편성 여부	13
<표 5> 미술품 구입에 사용되는 예산비율	14
<표 6> 미술품 구입 사례	17
<표 7> 정기적인 미술품 구입 여부	19
<표 8> 담당부서 및 담당자 유무	21
<표 9> 미술품 구입 경로	23
<표 10> 소장품 보유 수량	26
<표 11> 미술품 소장 장소	28
<표 12> 소장품의 활용도	30
<표 13> 구입미술품의 유형	32
<표 14> 지역작가 작품구입 여부	34
<표 15> 새 예술정책 미술은행 운영 방안	41
<표 16> 미술은행제도 연도별 소요예산	44
<표 17> 공공기관 대민서비스 공간 개선 시범 사업 연도별 예산	45
<표 18> KAIST 전시내용	53
<표 19> KAIST 공연내용	54
<표 20> KAIST 2004년 소요 예산	55
<표 21> 2003 제외공간 문화전시장화 사업추진 현황	57
<표 22> 2004 제외공간 문화전시장화 사업추진 현황	58
<표 23> 미술은행(Art Bank) 해외 사례	59
<표 24> FNAC의 예산과 작품구입 상황	66
<표 25> FNAC의 분야별 심사위원 인원	67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그림 2> 연구의 기대효과	4
<그림 3> 경기 전도	11
<그림 4> 미술품 예산편성 여부 응답비율	14
<그림 5> 미술품 구입예산 비율의 응답비율	16
<그림 6> 미술품 구입사례에 대한 응답비율	18
<그림 7> 정기적인 미술품 구입사례에 대한 응답비율	20
<그림 8> 담당부서 및 담당자 유무에 따른 응답비율	22
<그림 9> 미술품구입 경로에 대한 응답비율	25
<그림 10> 소장품 보유수량에 대한 응답비율	27
<그림 11> 미술품 소장 장소에 대한 응답비율	29
<그림 12> 소장품 활용에 대한 응답비율	31
<그림 13> 구입미술품 유형에 대한 응답비율	33
<그림 14> 지역작가 작품구입 여부에 대한 응답비율	35
<그림 15> 하나은행 본사(백남준, 하나로봇, 2001)	52
<그림 16> 하나은행 본사(백남준, Economic Super Highway, 2001)	52
<그림 17> FNAC 수장고 내부	73
<그림 18>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 사업의 성격과 목적	86
<그림 19> 협조체계 개발 및 구성의 틀	88
<그림 20> 구입운영의 기본틀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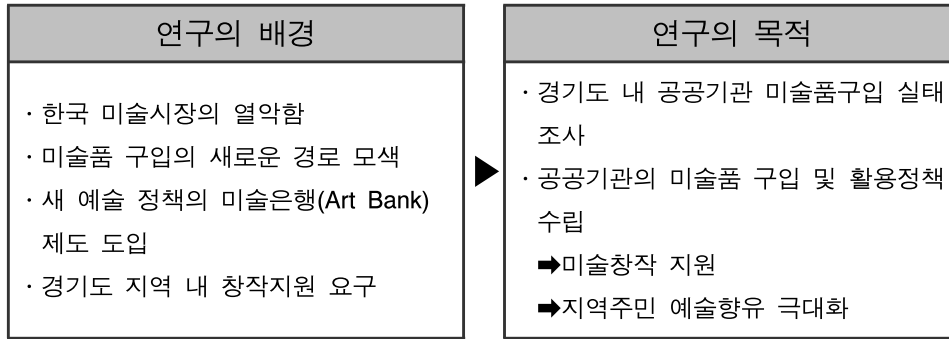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 미술시장의 열악한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상업화량을 중심으로 한 미술시장의 활성화가 여전히 어렵고, 화량을 매개로 한 작품 구입 이외의 여타 작품 구입 경로가 불확실한 점은 한국 미술시장의 최대 약점이기도 하다.
- 그러나 미술시장의 개념과 규모를 지나치게 화량에 의존하는 경향도 그런 약점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화량이 미술시장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여러 제도적 지원이 따라야함은 당연하지만, 화량 이외의 미술품 구입이 가능한 다른 경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일도 동시에 주어져야 할 일이다.
- 그런 점에서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이룬다는 목표는, 작가의 창작지원의 맥락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개념에 착안함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기존 미술관에서의 작품 구입의 경로와 절차를 공식화하는 일에서 시작하여, 기존 1%법에 따른 신축건물의 작품 구입에서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작품의 질이 높은 작가들에게 공정하게 작품 구입의 기회가 돌아가게 하는 일과 공공기관에서의 작품 구입의 사례들을 제도화하면서 그나마 가능한 작품 구입경로를 공식화하는 일 등이 해당될 것이다.
- 특히 지난 6월 확정 발표된 문화관광부의 '새 예술 정책'에서는, '공공부문의 미술품 활용 증대'를 목표로 미술은행(Art Bank)제도 도입을 제안한 바 인

속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미술품 구입을 통한 창작지원과, 이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을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이를 내년도 사업으로 상정하여 25억원을 편성하고, 이에 대해 작품 구입을 시도하여 활용하는 세부 사업안을 진행 중이다.

- 이같은 변화에 힘입어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경기도 지역의 미술시장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작품 구입 사례를 확대하여 그나마 작가의 작품구입을 돕고자 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구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미술품 구입, 소장, 관리시스템의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일선 자치단체에서의 미술품 관리 시스템을 객관화된 내용으로 자료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또한 경기도민의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라는 목표가 이같은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의 당위성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전제하는 가운데, 자료화된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미술품 관리시스템을 분석 연구하여 보다 양질의 미술작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었다.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미술품 구입, 소장, 관리시스템의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일선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미술품관리 시스템을 객관화된 자료로 만들어 조사 분석하고, 국내와 해외사례를 통해 미술품의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미술품 구입과 활용에 대한 지원시스템 사례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과 활용정책을 연구하며, 장기적으로는 (가칭)경기도 내 미술품 센터 설립 또는 (가칭)경기도 지역 미술기금의 설립 등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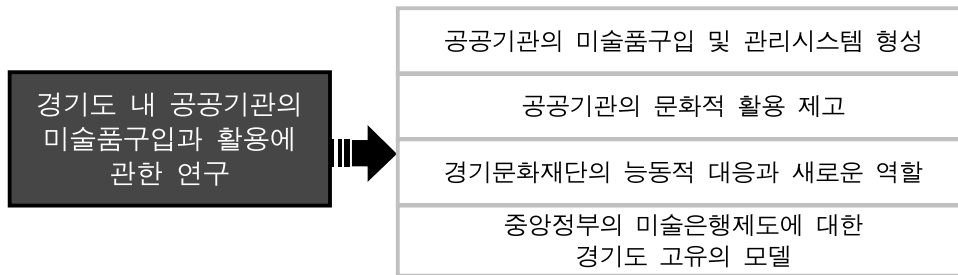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기대효과

- 공공기관에서 구입해 온 미술작품의 현황 조사와 활용방안에 대한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이후, 구입 미술작품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자료가 축적될 경우, 앞으로 공공기관에서의 좀더 규모 있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과 함께 효율적인 미술품 관리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은 작가에게는 창작의지를 고취시킬 뿐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경우 경기도민의 문화환경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정책이 된다. 따라서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서의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공공기관의 문화적 활용방안이 가능해 질 것이다.
- 이같은 사업은 경기문화재단의 미술지원사업의 한 형태로 작동함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미술시장의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로서, 새로운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의 형태는 기존의 미술은행(Art Bank)과는 달리, 경기도 지역의 현실과 재단 내 기금의 현실을 고려한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 특히 미술품 구입과 활용방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미술은행 제도에 대한 지역적 대응 사례로 제안될 수 있어, 경기도 고유의 문화정책으로 그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미술은행과 같은 대규모 미술유통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보다 큰 문화적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연구의 기대효과

3. 연구의 범위

1) 공공기관 미술품 구입 실태조사

- 경기도 31개 시·군내 공공기관에서의 미술품 구입 담당자, 혹은 각 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담당업무, 미술품 구입과 관련한 예산현황, 미술품 구입의 출처, 미술품 유형 등에 관한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한다.
- 실태조사 대상범위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내 공공기관으로 시청, 구청, 군청, 법원, 교육청, 도서관, 문화원, 문화재단, 문화의집, 복지시설 등으로 한정한다.

2) 새 예술정책 미술은행(Art Bank) 제도 분석

- 문화관광부에서 내놓은 '새 예술 정책'의 여러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공공 부문의 미술품 활용 증대 시안으로서의 '미술은행' 제도에 대한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3)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쟁점과 시사점 유추

- 이번 연구과제인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과 동일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미술품 구입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사례를 한정, 조사하여 그것의 쟁점과 시사점을 유추해 낸다. 특히 미술품 구입의 방식에서 다양한 기관의 접근과 운영방안을 분석하여, 추후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을 위한 운영방안에 적용하고자 한다.

4)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정책 수립 및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 및 장기 전략 수립

- 앞서 주어진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단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 및 활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나아가 (가칭)경기도지역 현대미술진흥기금 설립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II. 경기도 지역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 실태 및 현황

1. 실태조사의 목적과 방법

1) 실태조사의 목적

- 실태조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품 구입과 활용의 양상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차적으로는 전반적인 현황 파악의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서의 작품 구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가능한 기관을 파악하여 차후 정책적 쟁점으로 도입하는 데 있다. 또한 활용방안을 위한 공공기관의 네트워크의 가능성도 이번 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그러나 실태조사가 이번 연구의 중심이기보다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미술품구입 정책 수립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주어진 기간 내에 비교적 자료조사가 용이한 경우로 한정하여 실시하였음을 밝힌다.
- 실태조사 기간은 2004년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1차(9월), 2차(10월), 3차(11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2) 표본조사기관의 범위

- 표본조사기관의 범위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공공기관 중 시청, 구청,

10기관으로 한정하였으며, 이는 비교적 미술품구입과 활용에 가능성이 있거나 적합한 기관들로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표본조사기관은 총 216개 기관이 된다.

3) 표본조사방법

- 본 조사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면접법, 개인 면접법 그리고 전화면접법을 순차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에 사용한다.

■ 온라인면접법

- 각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면접법은 이메일 메시지에 서버에 대한 내용을 적은 후 응답자에게 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메일 서버이도 이메일 사용자의 정확한 주소록 확보가 중요하다.
- 그 결과 전체 기관의 홈 페이지를 통한 문화예술 관련 담당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토대로 주소록을 작성한 후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 경우 설문답변 수거는 이메일과 팩스로 받았으나, 극소수 기관만이 협조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기관은 2차 전화면접법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전화면접법

- 전화면접법은 온라인면접을 집행한 후 만족할만한 표본이 추출되지 않았을 경우 최대한의 표본 확보를 위해 시행한다.
- 이 경우 주소록을 통한 각 담당자 또는 기관 직원과의 전화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전화면접과 동시에 각 부서의 팩스로 협조공문을 보내는 방법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 개인면접법

- 개인면접법은 온라인면접을 집행한 후 만족할 만한 표본이 추출되지 않았을 경우이거나, 특별히 보충해야 할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 그리고 필요 자료를 직접 전달받아야 할 경우 개인면접을 신청해 시행한다.
- 개인면접법을 대표적으로 활용한 기관으로는 국내 미술품 구입 및 대여사업과 관련한 기관인 KAIST, 외교통상부,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4) 설문조사항목

-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과 활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항은 다음과 같다(실태조사에 사용되는 설문형식 별첨).

<표 2> 설문조사항목

항 목	설 문 항
미술품 구입 현황	미술품구입 예산편성여부 미술품구입 예산비율 미술품 구입사례 정기적인 미술품구입 여부 미술품 구입경로 구입미술품의 유형 지역작가 작품구입 여부
일 반 현 황	담당부서 및 담당자 유무
소 장 품 현 황	소장품 보유수량 소장 장소 소장품의 활용도

- 설문항은 총 9개 문항으로 크게 미술품 구입현황, 일반현황, 소장품현황 등

- 미술품 구입 현황에서는 미술품 구입을 위한 예산편성 여부와 미술품 구입 예산비율을 물었고, 이에 따라 미술품 구입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와 미술품 구입이 정기적인지의 여부를 물었다. 이어서 화랑 및 작가 등의 미술품 구입 경로에 대한 질문과 회화 및 조각 등의 구입 미술품의 유형과 구입 대상 작가의 지역 소속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 일반 현황에서는 미술품 구입시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부서명 및 담당자명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 소장품 현황에서는 현재 소장품 보유 수량과 소장 장소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장소를 사용하는지를 물었고, 마지막으로 관내 전시 등과 같은 소장품 활용의 경우를 물었다.

2. 표본조사 대상기관의 수

- 경기도 내 31개 시·군내에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시청 16개 기관, 구청 9개 기관, 군청 3개 기관, 법원 8개 기관, 교육청 13개 기관, 도서관 56개 기관, 문화원 24개 기관, 문화재단 2개 기관, 문화의 집 11개 기관, 복지시설 9개 기관(종합사회복지관만을 선정하여 조사) 총 151개 기관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각 기관별 세부적인 표본의 수는 [표-3] 지역별 공공기관 및 표본의 수에 나타나 있다.

-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문항에 대한 구체적 통계 결과분석은 '3. 설문조사결과 및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 경기 전도

<표 3> 지역별 공공기관 및 표본의 수

	시청	구청	군청	법원	교육청	도서관	문화원	문화재단	문화의집	복지시설	전 체
표 본 수	16	9	3	8	13	56	24	2	11	9	151
전 체	28	16	3	20	26	66	31	2	11	9	212
수 원 시	1	4	-	1	2	4	1	1	-	-	14
성 남 시	1	3	-	1	1	5	1	-	2	2	16
의정부시	1	-	-	1	1	1	1	-	-	-	5
안 양 시	1	2	-	-	1	4	1	-	-	-	9
부 천 시	1	3	-	-	1	4	1	1	1	2	14
광 명 시	1	-	-	1	1	2	1	-	2	1	9
평 택 시	1	-	-	1	1	3	1	-	-	-	7
동두천시	1	-	-	1	1	1	1	-	-	-	5
안 산 시	1	2	-	1	1	3	1	-	2	1	12
고 양 시	1	2	-	1	1	5	1	-	-	-	11
과 천 시	1	-	-	-	-	2	1	-	1	-	5
구 리 시	1	-	-	-	-	2	1	-	-	1	5
남양주시	1	-	-	1	1	2	1	-	1	-	7
오 산 시	1	-	-	1	-	1	1	-	-	-	4
시 흥 시	1	-	-	-	1	2	1	-	-	1	6
군 포 시	1	-	-	-	1	3	1	-	-	1	7
의 왕 시	1	-	-	-	-	1	1	-	-	-	3
하 남 시	1	-	-	-	-	1	1	-	-	-	3
용 인 시	1	-	-	1	1	1	1	-	-	-	5
파 주 시	1	-	-	1	1	3	1	-	-	-	7
이 천 시	1	-	-	1	1	2	1	-	-	-	6
안 성 시	1	-	-	1	1	1	1	-	-	-	5
김 포 시	1	-	-	-	1	2	1	-	-	-	5
화 성 시	1	-	-	-	1	3	1	-	1	-	7
광 주 시	1	-	-	1	1	1	1	-	-	-	5
양 주 시	1	-	-	-	-	1	1	-	-	-	3
포 천 시	1	-	-	1	1	1	1	-	-	-	5
여 주 시	1	-	-	1	1	2	1	-	-	-	6
연 천 군	-	-	1	1	1	1	1	-	-	-	5
가 평 군	-	-	1	1	1	1	1	-	1	-	6
양 평 군	-	-	1	1	1	1	1	-	-	-	5

3.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1) 미술품구입과 관련한 예산편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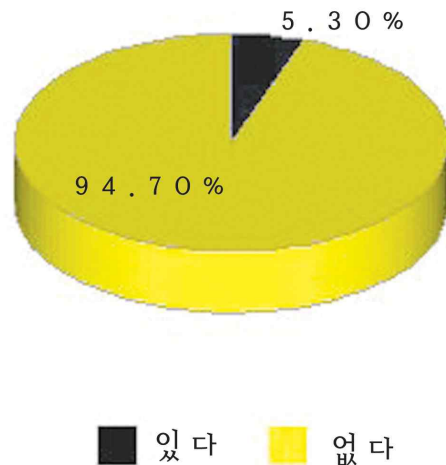
<표 4> 미술품 예산편성 여부

	전 체	있다	없다
전체 개수	151	8	143
전체 비율	100	5.30%	94.70%
시 청	16	6	10
	100	37.5%	62.5%
구 청	9	-	9
	100	-	100%
군 청	3	-	3
	100	-	100%
법 원	8	-	8
	100	-	100%
교 육 청	13	-	13
	100	-	100%
공공도서관	56	1	55
	100	1.79%	98.21%
문 화 원	24	-	24
	100	-	100%
문화 재단	2	1	1
	100	50%	50%
문화의 집	11	-	11
	100	-	100%
복지 시설	9	-	9
	100	-	100%

- 현재 미술품구입과 관련한 올해 예산편성여부에 대한 조사로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전체 151개 기관 중 8개 기관(5.30%)으로 현

(94.70%)으로 조사되었다.

- 전화면접을 통한 인터뷰결과, 이는 미술품에 대한 인식부족(자산관리 차원에서 미술품의 중요도 부족, 대민서비스 차원에서의 인식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미술품구입 계획은 있으나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 올해 미술품구입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기관으로는 안양시청, 광명시청, 안산시청, 구리시청, 부천시청, 시흥시청, 구리시립도서관, 경기문화재단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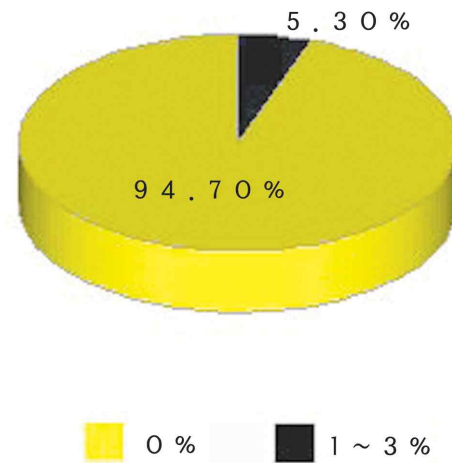
<그림 4> 미술품 예산편성 여부 응답비율

2) 미술품 구입 예산비율

<표 5> 미술품 구입에 사용되는 예산비율

	전 체	0%	1 ~ 3%
전체 개수	151	143	8
전체 비율	100	94.70%	5.30%
시 청	16	10	6
	100	62.5%	37.5%
구 청	9	9	-
	100	100%	-
군 청	3	3	-
	100	100%	-
법 원	8	8	-
	100	100%	-
교 육 청	13	13	-
	100	100%	-
공공도서관	56	55	1
	100	98.21%	1.79%
문 화 원	24	24	-
	100	100%	-
문화 재단	2	1	1
	100	50%	50%
문화의 집	11	11	-
	100	100%	-
복지 시설	9	9	-
	100	100%	-

- 앞서 제시한 [표 4]미술품구입의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8기관의 경우 전체 문화예술관련 예산 중 미술품구입 비율이 1~3%(5.30%)를 차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은 나머지 기관은 미술품구입 예산비율이 전혀 없는(94.7%)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5> 미술품 구입예산 비율의 응답비율

3) 미술품구입 사례

<표 6> 미술품 구입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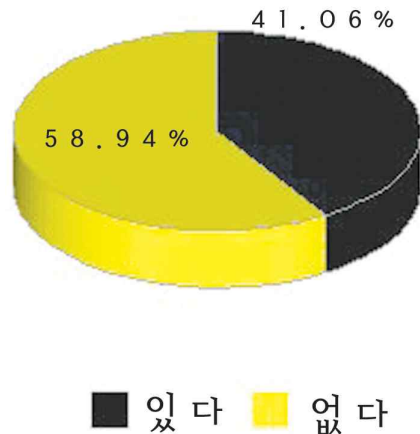
	전 체	있다	없다
전체 개수	151	62	89
전체 비율	100	41.06%	58.94%
시 청	16	10	6
	100	62.5%	37.5%
구 청	9	8	1
	100	88.89%	11.11%
군 청	3	2	1
	100	66.67%	33.33%
법 원	8	6	2
	100	75%	25%
교 육 청	13	2	11
	100	15.38%	84.62%
공공도서관	56	10	46
	100	17.86%	82.14%
문 화 원	24	13	11
	100	54.17%	45.83%
문화 재단	2	1	1
	100	50%	50%
문화의 집	11	8	3
	100	72.72%	27.27%
복지 시설	9	2	7
	100	22.22%	77.78%

- 미술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기관 내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작품이 해당되는 것으로 구입사례가 있는 기관이 전체 151개 기관 중 62개(41.06%)기관¹⁾이며, 구입 사례가 없는 기관

1) 고양시청, 과천시청, 광명시청, 구리시청, 부천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여주시청, 의정부시청, 부천시 소사구청, 성남시 중원구청, 수원시 권선구청, 수원시 영통구청, 수원시 장안구청, 안산시 단원구청, 안산시 동안구청, 안양시 만안구청, 가평군청, 연천군청,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법원, 여주지원법원, 오산시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평택지원법원, 성남교육청, 안양교육청, 구리시립교문도서관, 김포시립도서관, 남

이 89개(58.94%)기관으로 집계되었다.

- 구입한 경우를 살펴보면, 기관설립 당시 구입한 오래된 것으로 보존상태 및 예술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작품들이며, 구입의 대부분은 전체예산 중 환경관리비나 일반관리비예산 중 남는 예산이 있을 경우 구입하거나, 기관이 주관하고 참여하는 행사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참고로, 미술품 구입시 국가기관의 경우 조달청에서 제시한 정부미술품보관 관리규정²⁾을 참고하여 구입 및 등록과 함께 보관관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규정에 따른 보수 및 관리유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 미술품 구입사례에 대한 응답비율

문화원, 군포문화원, 김포문화원, 남양주문화원, 양평문화원, 용인문화원, 의왕문화원, 이천문화원, 파주문화원, 평택문화원, 포천문화원, 하남문화원, 화성문화원, 화성봉담 문화의집, 가평문화의집, 과천부림 문화의집, 광명문화의집, 광명시청소년문화의집, 남양주 진접문화의집, 부천문화의집, 성남문화의집,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경기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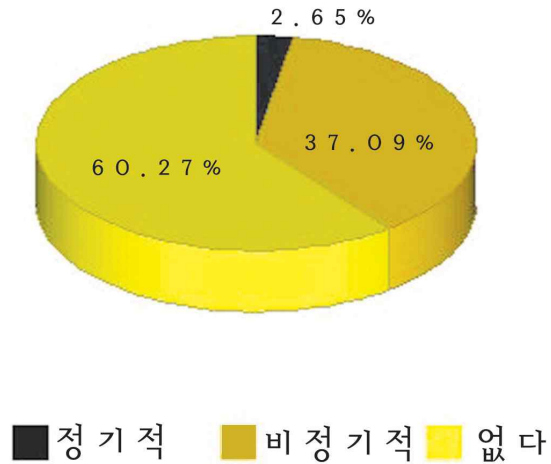
4) 정기적인 미술품 구입 여부

<표 7> 정기적인 미술품 구입여부

	전 체	정기적	비정기적	없음
전체 개수	151	4	56	91
전체 비율	100	2.65%	37.09%	60.27%
시 청	16	3	7	6
	100	17.65%	47.06%	35.29%
구 청	9	-	8	1
	100	-	88.89%	11.11%
군 청	3	-	2	1
	100	-	66.67%	33.33%
법 원	8	-	5	3
	100	-	62.5%	7.5%
교 육 청	13	-	2	11
	100	-	15.38%	84.62%
공공도서관	56	1	8	47
	100	1.79%	14.29%	83.93%
문 화 원	24	-	13	11
	100	-	54.17%	45.83%
문화 재단	2	-	1	1
	100	-	50%	50%
문화의 집	11	-	8	3
	100	-	72.72%	27.28%
복지 시설	9	-	2	7
	100	-	22.22%	77.78%

- 미술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정기적인 구입이 4개(3.31%)기관으로 광명시

못한 나머지 56개(37.09%)기관은 비정기적³⁾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미술품을 구입하지 않은 91개(60.27%)기관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 정기적인 미술품 구입여부에 대한 응답비율

3) 과천시청, 구리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양주시청, 오산시청, 의정부시청, 화성시청, 부산시소사구청, 수원시권선구청, 수원시영통구청, 수원시장안구청, 수원시팔달구청, 안산시단원구청, 안산시동안구청, 안양시만안구청, 연천구청, 수원시지방법원, 안산시지원법원, 여주지원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평택지원법원, 성남교육청, 안양교육청, 김포시립도서관, 남양주화도도서관, 부천시립도서관, 성남경기도립도서관, 성남시중앙정보문화센터, 오산시립도서관, 의정부시정보도서관, 화성시립태안도서관, 과천문화원, 군포문화원, 김포문화원, 남양주문화원, 양평문화원, 용인문화원, 의왕문화원, 이천문화원, 파주문화원, 평택문화원, 포천문화원, 하남문화원, 화성문화원, 화성봉담문화의집, 가평문화의집, 과천 부림문화의집, 광명문화의집, 광명시청수녀문화의집, 남양주지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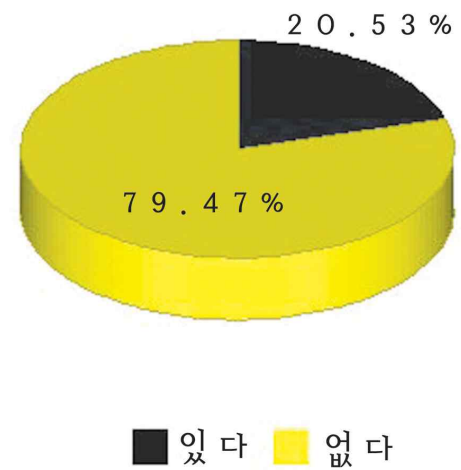
5) 담당부서 및 담당자 유무

<표 8> 담당부서 및 담당자 유무

	전 체	있다	없다
전체 개수	151	31	120
전체 비율	100	20.53%	79.47%
시 청	16	11	5
	100	70.59%	29.41%
구 청	9	5	4
	100	55.56%	44.44%
군 청	3	2	1
	100	66.67%	33.33%
법 원	8	4	4
	100	50%	50%
교 육 청	13	1	12
	100	7.69%	92.31%
공공도서관	56	4	52
	100	7.14%	92.86%
문 화 원	24	-	24
	100	-	100%
문화 재단	2	2	-
	100	100%	-
문화의 집	11	2	9
	100	18.18%	81.81%
복지 시설	9	-	9
	100	-	100%

(20.53%)기관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 응답에 응해준 담당부서(ex> 문화공보과,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과/회계과, 재무과/물품관리과, 청사관리과)가 각 지역마다 다른 부서에서 응답되는 등 일관성이 없었으며, 이는 미술품구입과 관련한 상호간 부서별 업무과약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 중 시스템이 비교적 잘 짜여진 기관의 경우 대체적으로 회계과, 재무과에서 예산집행을 하며, 문화예술과의 협조아래 작품구입을 하고 물품관리과에서 작품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대부분 미술품구입과 관련한 담당기관 및 담당자가 없는 기관이 120개(79.47%)기관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림 8> 담당부서 및 담당자 유무에 따른 응답비율

4) 광명시청, 구리시청, 부천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주시청, 여주시청, 의정부시청, 이천시청, 부천시소사구청, 성남시중원구청, 수원시권선구청, 수원시영통구청, 수원시장안구청, 가평군청, 연천군청, 안산지원법원, 여주지원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평택지원법원, 경기도교육청, 고양시립도서관, 남양주시립도서관, 남양주화도도서관

6) 미술품의 구입경로

<표 9> 미술품 구입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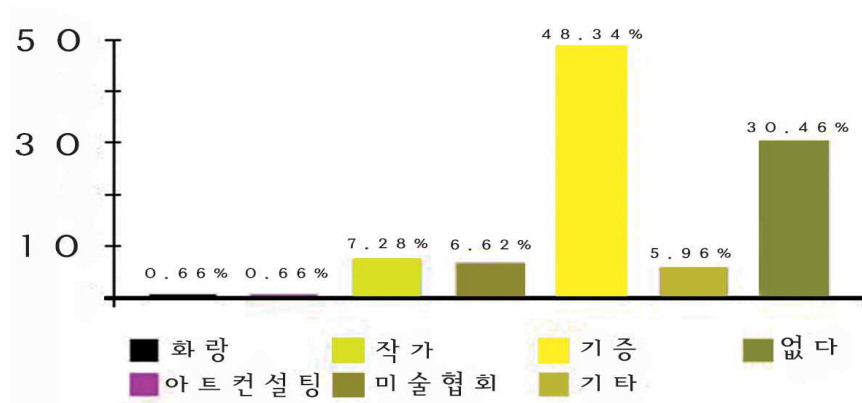
	전 체	화랑	아트 컨설팅	작가	미술 협회	기증	기타	없음
전체 개수	151	1	1	11	10	73	9	46
전체 비율	100	0.66%	0.66%	7.28%	6.62%	48.34%	5.96%	30.46%
시 청	16	-	-	-	3	5	2	6
	100	-	-	-	17.65%	35.29%	11.76%	29.41%
구 청	9	1	-	1	-	6	-	1
	100	11.11%	-	11.11%	-	66.67%	-	11.11%
군 청	3	-	-	1	-	1	-	1
	100	-	-	33.33%	-	33.33%	-	33.33%
법 원	8	-	-	-	2	4	2	-
	100	-	-	-	25%	50%	25%	-
교 육 청	13	-	-	-	1	11	1	-
	100	-	-	-	7.69%	84.62%	7.69%	-
공공도서관	56	-	-	7	3	28	4	14
	100	-	-	12.5%	5.36%	50%	7.14%	25%
문 화 원	24	-	-	1	1	11	-	11
	100	-	-	4.17%	4.17%	45.83%	-	45.83%
문화 재단	2	-	-	1	-	-	-	1
	100	-	-	50%	-	-	-	50%
문화의 집	11	-	1	-	-	7	-	3
	100	-	9.09%	-	-	63.64%	-	27.27%
복지 시설	9	-	-	-	-	-	-	9
	100	-	-	-	-	-	-	100%

- 화랑이나 아트컨설팅과 같이 검증된 통로를 통해 미술작품을 구입한 기관은 수원시 권선구청, 부천문화의 집으로 2개 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은 기증을 통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증을 받은 기관은 73개(48.34%)기관으로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는 지역작가의 작품기증이 대부분

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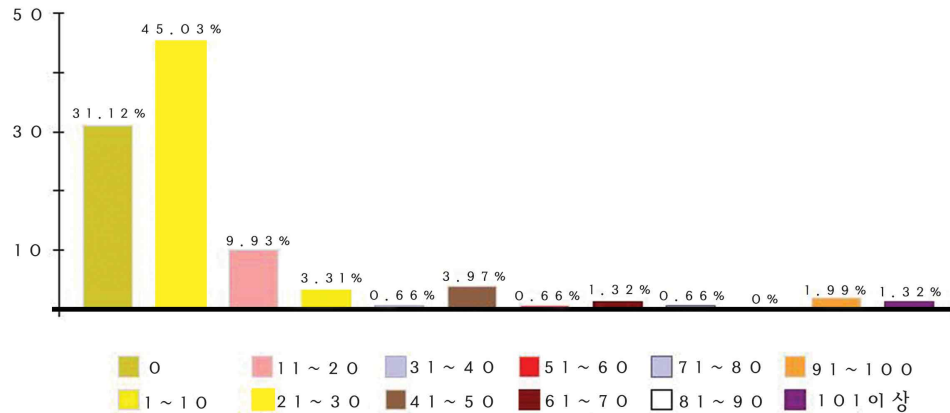
- 다음으로는 작가와 미술협회를 통해 구입 및 기증을 받는 경우⁵⁾이며, 기타의 응답으로는 지역전시 및 미술대전에서의 작품 구입 또는 대여 등 응답이 있었다.
- 도서관의 경우도 기증을 통한 소장품 수집이 대부분인 것으로 기증의 상당 부분이 시청이나 타도서관에서 기증 또는 대여 받았으며 그 밖의 응답으로는 일반인 또는 인근지역화랑에서 화랑홍보차원에서 1년에 2번씩 대여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육청의 경우도 소장품의 대부분이 기증받았으며 대부분 교사들의 작품기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복제품이나 학생들의 작품을 기증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천시청의 경우는 이천시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행사를 통해 교육청에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작품대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복지시설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해 미술품구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작 가 : 수원시 영통구청, 가평군청, 광명시 하안도서관, 김포시립도서관, 남양주화도도서관, 부천시립도서관, 부천시립 북부도서관, 수원경기도립중앙도서관, 오산시립도서관 용이문화원 구리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문화재단



<그림 9> 미술품 구입경로에 대한 응답비율

- 1~10작품 내외로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 63개(45.03%)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술품을 구입하지 않는 기관이 47개(31.12%)기관으로 조사되었다.
- 100점 이상 되는 기관은 5개(3.31%)기관으로 안양시청, 광명시청이 100점, 안산시청이 150점, 성남시 중앙정보문화센터가 200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의 경우 기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더라도 오랫동안 관리유지 없이 방치되어 보존상태가 좋지 않거나 작품 중에는 복제품도 다수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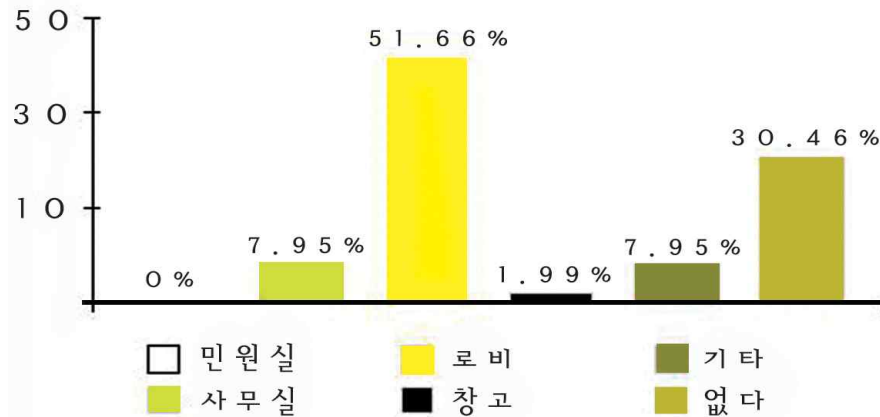
<그림 10> 소장품 보유수량에 대한 응답비율

8) 미술품 소장 장소

<표 11> 미술품 소장 장소

	전 체	민원실	사무실/ 회의실	로비	창고	기타	없음
전체 개수	151	-	12	78	3	12	46
전체 비율	100	-	7.95%	51.66%	1.99%	7.95%	30.46%
시 청	16	-	-	9	-	-	7
	100	-	-	56.25%	-	-	43.75%
구 청	9	-	2	6	-	-	1
	100	-	22.22%	66.67%	-	-	11.11%
군 청	3	-	-	2	-	-	1
	100	-	-	66.67	-	-	33.33%
법 원	8	-	-	5	2	1	-
	100	-	-	62.5%	25%	12.5%	-
교 육 청	13	-	1	11	-	1	-
	100	-	7.69%	84.62%	-	7.69%	-
공공도서관	56	-	2	33	-	6	15
	100	-	3.57%	58.93%	-	10.71%	26.79%
문 화 원	24	-	7	5	1	-	11
	100	-	29.16	20.83%	4.17%	-	45.83
문화 재단	3	-	-	1	-	-	1
	100	-	-	50%	-	-	50%
문화의 집	11	-	-	5	-	3	3
	100	-	-	45.45%	-	27.27%	27.27%
복지 시설	9	-	-	1	-	1	7
	100	-	-	11.11%	-	11.11%	77.78%

- 미술품의 소장 장소를 묻는 문항에서는 대부분 관내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체 기관 중 78개(51.66%)기관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 다음으로 사무실 및 회의실에 소장하는 기관으로 총 12개(7.95%)기관⁶⁾과 기타 소장 장소로는 총 12개(7.95%)기관⁷⁾으로 관사실, 관장실, 휴게실, 현관, 계단, 열람실 및 자료실, 복합문화실, 식당 등으로 조사되었다.
- 창고에 소장하는 기관으로는 오산시 법원, 과천문화원, 경기문화재단(수장고)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 미술품 소장 장소에 대한 응답비율

6) 안산시 단원구청, 안양시 만안구청, 경기도교육청, 가평군립도서관, 구리시립인창도서관, 군포문화원, 김포문화원, 양평문화원, 용인문화원, 이천문화원, 파주문화원, 화성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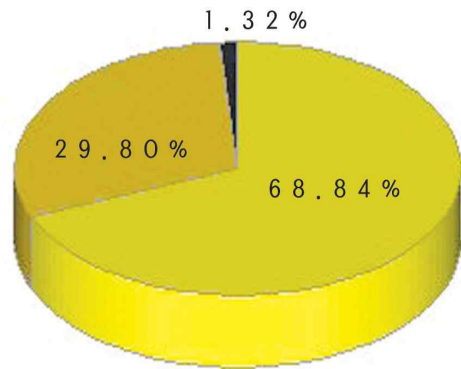
7) 인천북지바버원, 시흥교육청, 나양주시립도서관, 부천시립시공도서관, 안산시립과사도

9) 소장품의 활용도

<표 12> 소장품의 활용도

	전 체	전시(관내)	대여	기타	없음
전체 개수	151	104	-	2	45
전체 비율	100	68.84%	-	1.32%	29.80%
시 청	16	9	-	1	6
	100	58.82%	-	5.88%	35.29%
구 청	9	8	-	-	1
	100	88.89%	-	-	11.11%
군 청	3	2	-	-	1
	100	66.67%	-	-	33.33%
법 원	8	8	-	-	-
	100	100%	-	-	-
교 육 청	13	13	-	-	-
	100	100%	-	-	-
공공도서관	56	41	-	-	15
	100	73.21%	-	-	26.79%
문 화 원	24	12	-	1	11
	100	50%	-	4.17%	45.83%
문화 재단	2	1	-	-	1
	100	50%	-	-	50%
문화의 집	11	8	-	-	3
	100	72.72%	-	-	27.27%
복지 시설	9	2	-	-	7
	100	22.22%	-	-	77.78%

- 전체 151개 기관 중 104개(68.84%)기관이 관내에 전시로만 활용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이 설립당시부터 보수 및 관리유지 없이 그대로 소장되던 장소로서 미술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관리의 소홀함을 보여주고 있다.
- 기타기관으로는 이천시청(순회전 기획), 과천문화원(창고 보관)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 전시(관내) ■ 없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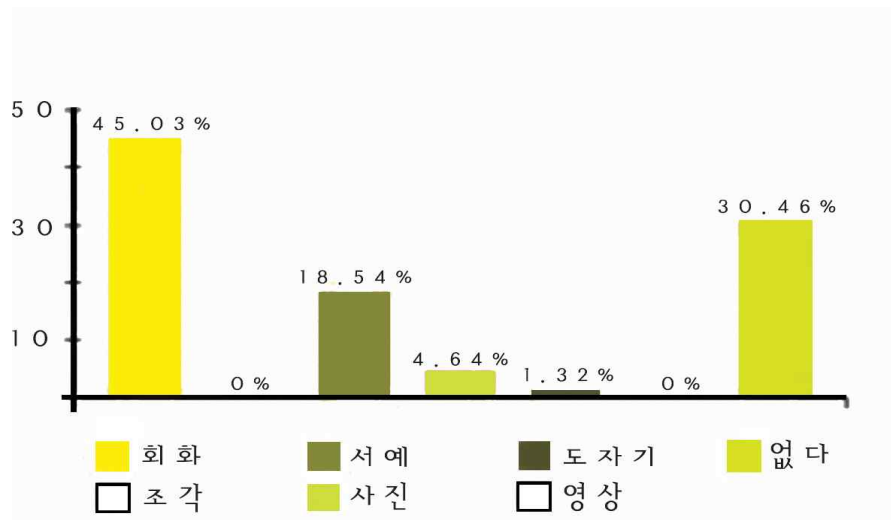
<그림 12> 소장품 활용에 대한 응답비율

10) 구입미술품의 유형

<표 13> 구입 미술품의 유형

	전 체	조 각	서예	도자기	회화	영 상	사진	기 타	없음
전체 개수	151	-	28	2	68	-	7	-	46
전체 비율	100	-	18.54%	1.32%	45.03%	-	4.64%	-	30.46%
시 청	16	-	-	-	9	-	-	-	7
	100	-	-	-	58.82%	-	-	-	41.18%
구 청	9	-	2	-	4	-	2	-	1
	100	-	22.22%	-	44.44%	-	22.22%	-	11.11%
군 청	3	-	-	-	1	-	1	-	1
	100	-	-	-	33.33%	-	33.33%	-	33.33%
법 원	8	-	1	-	7	-	-	-	-
	100	-	12.5%	-	87.5%	-	-	-	-
교 육 청	13	-	-	-	13	-	-	-	-
	100	-	-	-	100%	-	-	-	-
공공도서관	56	-	15	2	22	-	2	-	15
	100	-	26.79%	3.57%	39.29%	-	3.57%	-	26.79%
문 화 원	24	-	9	-	4	-	-	-	11
	100	-	37.5%	-	16.67%	-	-	-	45.83%
문화 재단	2	-	-	-	1	-	-	-	1
	100	-	-	-	50%	-	-	-	50%
문화의 집	11	-	1	-	6	-	1	-	3
	100	-	9.09%	-	54.55%	-	18.18%	-	27.27%
복지 시설	9	-	-	-	1	-	1	-	7
	100	-	-	-	11.11%	-	11.11%	-	77.78%

- 작품의 유형은 회화작품이 68개(45.03%)기관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예(20개 기관/18.54%), 사진(7개 기관/4.64%), 도자기(2개 기관/1.32%)순으로 조사되었다.
- 소장품이 전혀 없는 기관은 전체기관 중 46개(30.46%)기관으로 조사되었다.
- 사진의 경우 대부분 지역축제와 관련한 축제사진들이 많았으며, 이러한 작품들의 대부분이 인근 대학교 사진과 학생들의 사진작품이나 일반인들의 사진으로 조사되었다.
- 도자기, 조각, 영상 설치작품 등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거나 관리가 수월하지 않아 대부분 소장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도서관이나 문화의 집의 경우 대부분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한 건물들이 많아 주로 크기가 작은 회화작품만이 소장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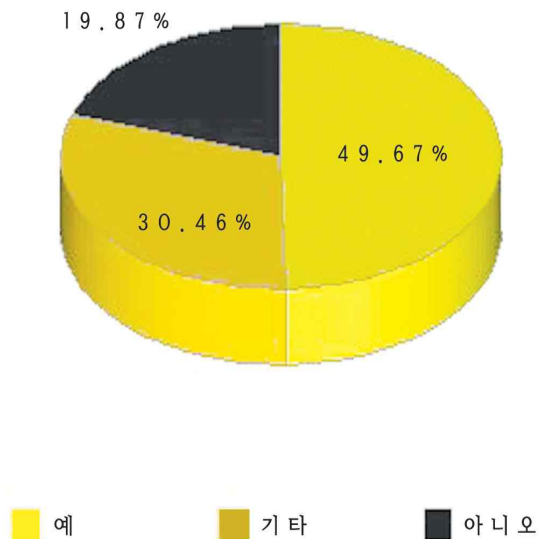
<그림 13> 구입미술품 유형에 대한 응답비율

11) 지역작가 작품구입 여부

<표 14> 지역작가 작품구입 여부

	전 체	예	아니오	기타
전체 개수	151	75	30	46
전체 비율	100	49.67%	19.87%	30.46%
시 청	16	8	8	-
	100	50%	50%	-
구 청	9	3	2	4
	100	33.33%	22.22%	44.44%
군 청	3	2	-	1
	100	66.67%	-	33.33%
법 원	8	5	1	2
	100	62.5%	12.5%	25%
교 육 청	13	1	4	8
	100	7.69%	30.77%	61.54%
공공도서관	56	28	11	17
	100	50%	19.64%	30.36%
문 화 원	24	16	1	7
	100	66.67%	4.17%	29.16%
문화 재단	2	2	-	-
	100	100%	-	-
문화의 집	11	8	1	2
	100	72.72%	9.09%	18.18%
복지 시설	9	2	2	5
	100	22.22%	22.22%	55.56%

- 미술품구입 또는 미술품을 구입하지 않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후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지역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전체 75개(49.67%)기관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 그러나 46개(30.46%)기관의 경우는 기타의견으로서, 구입이전에 예산편성의 문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 외 지역구분 없이 작품성을 고려하여 구입하겠다는 의견으로 조사되었다.
- 다음으로 '아니오'로 응답한 기관의 경우는 전체 중 30개(19.87%)기관으로 대부분은 미술품구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추후에도 구입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견도 조사되었다.



<그림 14> 지역작가 작품구입 여부에 대한 응답비율

4. 쟁점 및 전망

- 1) 공공기관이 미술품을 구입하고 있지만, 대부분 미술품 구입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차후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안이 공공기관의 미술품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데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2) 미술품에 대한 인식은 자산으로서의 차원과 미술품이 갖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차원으로 나뉠 수 있겠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자산으로서도 인식되지 못해 보존과 관리가 너무도 허술하며, 또 전시 공간을 배려하기 보다는 여유 있는 공간에 전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미술품이 갖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술품 구입을 작가에 대한 창작 지원이자, 주민의 예술향유 기회 증대라는 또 다른 목표로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므로,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 3) 이처럼 미술품 구입 및 활용에 대한 인식이 전제된다면, 오히려 미술품 구입을 위한 예산 설정의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미술품 구입을 위한 담당 부서 역시 일관된 구조로 잡힐 수 있을 것이며, 이미 구입한 작품에 대해서도 관리가 용이해 질 수 있다. 또한 대체로 남은 예산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미술품 구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건이 열악한 기관의 경우는 남은 예산의 활용을 권고할 수도 있다.
- 4) 미술품 구입을 정기적으로 하는 기관을 보면, 광명시, 부천시, 안양시, 구리시로 드러났는데, 이 경우 보다 적극적인 권고를 시행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 문화재단과 정책적 연계를 하여 더 큰 효과를 얻어낼 가능성을 갖는다.

우가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실제로 화랑 등의 경로를 제안해 줄 경우, 간접적이지만 지역의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을 위한 컨설팅을 할 경우, 화랑을 매개로 한 구입경로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6) 교육청의 경우 작품 구입 경로를 보면 교사들의 기증이 두드러지는데, 이같은 특성을 고려해 교육청 자체를 미술교사와의 연계를 실천하는 특별기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교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기증만이 아니라 우수 작품의 구입을 장려하고, 교육청의 여러 문화기관을 활용하여 작품을 전시하는 등 향유 프로그램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7) 실제 소장 작품의 보존 실태를 본 결과, 미술품 구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소장품의 보존에 대한 인식 제고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소장품 관리와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도 있다.
- 8) 구입 작품의 유형을 살펴 본 결과, 회화나 서예와 같은 작은 규모의 평면작업이 주가 되고 있는데, 이는 차후 작품 구입에서 미술품의 유형을 '장식성' 기능으로 축소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차후 미술품 구입에 대한 컨설팅 부분에서 장식성에 준하는 작품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형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 9) 작품 구입의 경우 지역작가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지역작가에 대한 배려가 보다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컨설팅에서 좋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미술 활성화를 위한다는 점에서 지역작가 중심의 컨설팅은 의미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한정하기보

- 10)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했지만, 차후 공기업의 미술품 구입 현황에 대한 조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예산 편성이나 미술품에 대한 인식이 공기업의 경우 더 수월한 면이 없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공기업으로 대상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 11)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을 공식화 할 경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행정적으로 편리함을 얻을 수 있거나, 활용방안에서 대민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Ⅲ. 새 예술정책의 미술은행(Art Bank)제도 및 사례연구

우선 이번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새 예술정책에서의 미술은행제도에 대한 사업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미술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사례 및 미술은행제도가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국외 사례를 들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새 예술정책의 미술은행(Art Bank) 제도

미술은행은 정부가 미술품을 구입, 보관 및 전시하여 정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미술품을 대여(판매)하는 제도로서 이번 새 예술정책 과제 중 공공부문의 미술품 활용 증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은행(Art Bank)제도의 도입 배경

가. 미술계의 현실

- 매년 많은 신진작가들이 배출되지만 극소수의 작가를 제외하고는 작품 판매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실정이며, 역량 있는 작가들의 경우도 작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 ※ 미술시장은 1990년대 이후 불황이 계속 : 연간 300~400억원 규모 추산
- 거래 형태는 화랑(4~50%), 개인(20%), 경매(10%), 사이버(10%)로 추산
 - 화랑·골동품상 30~40% 격감, 작품 값 평균적으로 106.77%정도 하락
 - 소더비, 크리스티경매 : 매년 약 4조원, 일본 : 약 1조원(2003년)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미술에 대한 낮은 인식 및 가격 부담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감상하는 것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침체된 미술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 고가 미술작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소비자를 대상으로 미술품 대여사업이 일부 민간화랑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규모이고 일회적이다.

- 표갤러리, 예맥화랑이 선두주자로 운영, 비전문적이며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
- 회사, 업소, 모델하우스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일반시민 고객은 많지 않는데, 미술품 임대업은 초기단계로 수익성보다 고객 창출전략의 일환으로 운영 중

-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도, 작품 컬렉션 기능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 그러나 아직 기증에 상당 의존 : 소장 작품 5,254점 중 기증 2,389점(54%)
- 미술관 소장품의 경우 미래의 국보, 보물로서 수집, 관리, 보존에 일차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신진작가의 작품의 수집에는 한계가 있다.

나. 도입 취지

- 정부가 미술품을 구입하여 정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다. 운영 주체

- 사업 초기(2~3년간) : 작품 확보 등 기틀 마련 이전, 국립현대미술관 주관
- 사업 성숙 단계 : 재단법인 한국미술은행(가칭) 설립

<표 15> 새 예술정책 미술은행 운영 방안

기 능	운영 방식
사업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또는 재단법인 미술은행관리위원회 설치
공 간	· 수도권내 적정 공간 임대 및 리모델링
구 입	· 창작활동지원 차원에서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입 - 국립현대미술관 컬렉션과 차별화 · 작품구입은 미술인 중심의 전문 「구입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 · 사업 초기(5년간) 적정 작품 확보 목표 : 1,000점
보 관	· 미술품은 향온·항습(습도 50~55%)설비가 구비된 특수시설에서 보관되어야 하므로 수도권내 적정공간을 장기(5년) 임대하여 사용하고 향후 적정규모의 수장고 확보
활 용	· 대여 - 국가 및 지자체, 대사관 등에 작품 대여 - 소장품이 부족한 공사립미술관에 작품 대여 - 개인·기업체 등에 일정 기간동안 유상 대여도 검토 · 전시 : 신진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여 전시기회 확대 · 판매 : 신진작가들이 중견작가가 되어 작품가격이 상승할 때, 필요에 따라 소장품을 판매함(10년 이후)

2) 미술은행(Art Bank)제도 세부 시행 방안

가. 작품 확보

- 작품의 구입
 - 미술시장 활성화 및 작가 지원 차원에서 신진 작가의 작품 중심으로 구입
 - 우선 매년 200~300점씩 1,200점 확보 목표 : 60억원(1,200점 × 500백만원)
 - ※ 1,000~1,200점 확보 목표로 추진하되, 향후 임대 소요 등을 감안하여 목표 수정
 - 작품은 공인 화랑을 통하거나, 공모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구입하여 공정성 확보
 - 수장고 확보시 중요작가들의 작품수탁사업도 실시하여 대여 작품으로 활용

- 일부 국립현대미술관 및 문예진흥원 소장 작품의 활용
 - 미술관에서의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소장 작품을 선별, 미술은행에서 활용
 - 미술관 소장미술품은 미술사적, 문화사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장되거나 미술은행용 미술품은 대중성과 관객의 기호가 우선할 수밖에 없어 작품의 질과 성격에서 차이 존재

- 일부 정부 소장 미술품 활용
 - 현재 중앙부처 및 지자체 소장 미술품(2만 3천점)의 관리·운영상

관리 추진

※ 미술품은 물자관리법에 의거, 일반물자와 별도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각 부처별로 관리, 조달청은 물품관리법을 개정하여 전문단체(현대미술관 등)에 위탁 강구 중

나. 운영 주체

- 사업초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사업 주관
 - 미술은행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초기 2~3년간 실무 담당
 - 미술은행을 위해서는 작품의 수집·관리, 수복 및 복원, 대여 및 대여 작품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우선 4~5명 계약직 직원 채용)

- 별도의 독립 법인 설립
 - 미술은행의 활성화 단계에서 추진(전문 직원 확보 : 15~20여명)

다. 미술품 활용

- 공공기관 대상
 - 국가 및 지자체, 대사관, 소장품이 부족한 공사립미술관에 작품 대여
 - 구청 민원실, 병원, 철도역사, 대사관 등 생활 주변의 대표적인 대민서비스 공간(다중이용시설)을 선정, 미술품을 활용한 리모델링 시범사업 실시
- ※ 미술은행을 통해 단순히 미술품만 대여하고 공간 환경을 고려한 미술품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술은행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일

- 일반인 대상의 대여 방안은 향후 검토
 - 개인·기업체 등 유상 대여 : 대여료는 작품 가액의 3~5%(월), 통상 6개월 단위
 - ※ 특히 아파트 모델하우스, 금융기관, 기업의 각종 이벤트 등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 이 경우 민간화랑 등의 미술품 리스 사업과 충돌 가능성이 있으나 화랑의 경우, 이를 큰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미술은행 주최, 작가의 국내외 소개를 위하여 순회 미술제 등 개최

라. 연도별 소요예산

<표 16> 미술은행제도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 미술은행 운영체제 구축	국고		500				500
○ 작품구입	국고			5,000	5,000	5,000	15,000

3) 공공기관 대민서비스 공간 개선 시범사업 실시

가. 사업목적

- 미술은행을 활용하여 대민서비스 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

나. 사업내용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현대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등 계획 중이거나 개편 중인 국립현대미술관, 지역

- 미술은행을 통해 단순히 미술품만 대여하고 공간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미술품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술은행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홍보 및 인식제고를 위해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 공간조성의 기본 컨셉 설정 → 공간 특성과 이용자의 취향을 고려한 작품 선정 → 안전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설치 → 작가초청 기념행사 개최 및 언론 홍보 →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다. 기대효과

- 미술은행 제도를 통한 대민서비스 공간의 열악한 수준과 질적 수준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 미술은행 제도의 주 활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문화적 마인드 제고

라. 추진일정 및 연도별 소요예산

- 2005년 : 병원, 사회복지시설 리모델링 등 1차 시범사업 실시
- 2006년 : 구청 민원실, 대사관 리모델링 등 2차 시범사업 실시
- 연도별 소요예산

<표 17> 공공기관 대민서비스 공간개선 시범사업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 1차 시범사업	국고		300				300
○ 2차 시범사업	국고			300			300

4) 2005년 사업을 위한 시행방안

가. 기 금 : 25억

나. 운영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다. 운영방안 : 미정

5) 문제점

가. 문화관광부는 ‘미술은행’ 설립 목적을 신진미술가의 창작활동 진흥과 국내 미술시장의 활성화,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미술 문화 공간 확대와 이를 통한 국민의 미술 감상 기회의 확대, 미술품 대여 및 전시를 통한 미술문화의 대중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목적을 묶는 미술진흥의 이념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각각의 사업은 분리되어 있어 마치 기능적으로 배분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다시 말하면 신진작가 중심으로 작품을 구입하는 일과, 미술시장을 활성화하는 일, 구입 작품 대여나 전시를 통해 대국민 미술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술은행에 대한 전체적인 이념과 철학을 분명하게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 기본적으로 미술은행은 미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창작지원 형태의 하나로서, 그 성격에서 시장성을 형성하기 힘든 창의적이고 실험성 높은 작품을 구입하여 나름대로 시장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 그 주요 기능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신진 작가의 작품을 구매함으로써 창작의지를 돋우고 격려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 대상이 전적으로 신진작가일 수만은 없다. 신진작가의 작품이 모든 예술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것이

들의 지원이라는 목적은 자칫 아직 작품 가격이 높게 책정되지 않은 작품을 구입하여 미술은행의 구입 작품 목표 수치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많다.

다. 이렇듯 미술은행의 목적이 분명치 않을 경우, 미술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목적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애매하게 신진작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구입한다고 할 경우, 화랑의 참여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가 불분명해지면서 이 또한 배분율로 적당히 나눠 갖는 식으로 전개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것처럼 미술은행의 목적을 미술 진흥으로 두게 되면, 화랑의 참여는 이미 시장성이 주어진 작가에만 연연하지 않고 예술성과 창의성을 갖는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게 될 경우로 제한되어, 배분율로 화랑의 참여를 나누는 식의 해결은 자연스럽게 배제되리라 본다. 그런 점에서 미술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일은, 화랑의 체질 개선과 작가 발굴을 위한 화랑 자체의 제도적 대안 마련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술은행이 진정한 의미의 미술진흥을 목표로 하면서 화랑의 성장도 동반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라. 다른 한편 공공기관의 미술공간화를 피하여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한다는 목표도 이런 맥락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장에서 경기도 지역 내의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실제로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인식과 그의 활용에 대한 인식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선언적으로 주장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과 활용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위한 작업이 매우 큰 몫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본다. 만일 그렇지 않

서 미술은행이 진정한 의미의 예술적 경쟁력을 갖는 작품에 대한 시장성 형성이라는 목적이 아닌, 장식적 작품의 구입과 배분으로 그칠 소지가 다분하게 된다. 동시에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미술공간을 확보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미술작품을 구입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 그러나 작가와 작품의 경쟁력을 고려할 경우, 미술은행의 목적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미술은행의 목적을 예술성과 창의성을 갖춘 작품을 구입한다는 일이 새로운 작가 발굴과 이로 인한 시장성 형성이라는 점에 둔다면, 사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입된 작가들과 작품들이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미술계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다른 지원체계를 미술은행이 제안해야 하는 점에서 그렇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술은행의 신진작가 작품 구입과 공공기관의 활용이라는 점, 국민의 미술문화향유라는 점은 예술성과 창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갈등관계를 아직 염두에 두지 못한 것은 미술은행의 목표를 기능적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두었기 때문이라는 문제점을 반복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바. 정부가 고려하는 제도 시행에 따른 수익성은 생각처럼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 새 예술정책에서는 모델하우스 등에 상당한 수요를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 모델하우스에 활용되는 작품은 장식적 요소가 강한 작품이 대부분이며, 그것도 매년 인테리어 유행이 변화하면서 활용도가 낮게 된다. 더구나 주택사업의 변화로 후 분양제가 실시되면 모델하우스 자체를 건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수요의 발생을 낙관하기가 어렵다.

사. 미술은행제도의 선결과제는 작품을 보관하기 위한 수장고 건립에 있다.

그러나 건립에 소요될 막대한 비용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이 마련되어

이후 독립 공간 확보에 따른 비용은 수 백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450평 규모와 3,000점 보관이 가능한 국립현대미술관의 현 수장고는 부지매입비와 연간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설치비로 750억원이 들었다.

아. 작품 구입비 또한 연간 50억원 가량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도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 미술계로 봐서야 작품 구입비가 많으면 좋겠지만 신진작가의 작품 1점 구입비로 넉넉히 잡아 평균 500만원으로 했을 때 연 1,000여점을 구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실제 1,500여점 이상을 미술은행관리위원회에서 구입하게 될 텐데 초기 확보 1,000여점, 연간 200여점 구입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에 대한 좀더 면밀한 미술시장의 흐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자. 관리에 있어서도 작품가격단위에서의 다양한 차이와 구분에 따른 작품유형 등을 고려한 운영의 묘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작품의 데이터베이스 작성과 포장, 관리, 향온·향습시설유지 등을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작품을 보관하고 대여하기 위한 관리비용 증가, 보관, 대여에 따른 행정절차의 문제, 작품 보험가입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운영방침이 요구된다.

차. 신진 작가의 작품을 구매함으로써 창작의지를 돋우고 염가로 작품을 판매하여 미술품 거래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이룬다는 취지에 있어서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의 구입, 판매, 특히 작품 판매를 미술은행관리위원회에서 한다면 작품의 구입과 판매에 따른 유통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 새 예술정책 및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이 주는 의미 중의 하나는 주로 창작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지원제도에 비해 창작, 향수, 유통까지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다. 즉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

은행제도상의 작품 구입과 판매에서는 유통구조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 해외에서는 미술관의 작품의 구입이 대체적으로 전속화랑, 또는 직전에 전시한 화랑을 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한국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부터 대부분 작가와의 직거래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술은행관리위원회에서 작가와의 직거래, 컬렉터와의 직거래만을 고집한다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미술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오히려 역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카. 미술은행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작품의 구입과 판매에 따른 유통구조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새 예술정책 및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이 주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주로 창작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지원제도를 유통과 향수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합리적이고 건전한 유통구조를 조성하는 일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화랑은 전속작가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경우여서 그 조건이 다르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화랑이 전속작가제도를 서서히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미술은행위원회에서는 구입경로를 다양하게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작가와의 직거래, 컬렉터와의 직거래만이 아니라, 전속작가제도를 시행하는 화랑과 전시회를 통해 최소한의 지원을 한 화랑 등에 대해서도 기회를 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국내사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미술은행제도에 대한 사례가 없으며,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본 연구(국내사례)에서

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1) 하나은행

가. 사업목적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문화마케팅을 통한 대고객 서비스, 주주와의 관계 강화 등 단기적인 효과와 브랜드 가치 상승과 기업 이미지 제고

나. 사업내용

- 1971년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영업점에 전시해 ‘은행 객장의 미술관화’ 시도
- 2003년말에 2,700여점의 작품소장 및 매년 20여 억원을 문화활동에 지출(서화 구입비는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
- 1996년 국내 최초로 미술품담보대출 상품 시판
- 2001년에는 아트클럽 정기예금 등의 상품 시판
-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은행신탁 상품을 통해 모집된 자금을 국내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한 ‘하나 시네마투자신탁’ 시판
- 문화관광부와 협약을 맺고 문화산업진흥기금 대출을 진행, 영상 음반게임 출판 등의 문화산업 기업에 연 3.5~4.5%의 낮은 금리를 제공
- 전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전시공간을 무료로 대여
- 서울시립미술관과 후원협약을 체결하고, 미술품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임대(서울시립미술관은 하나은행이 기증하는 작품군을 「하나은행 컬렉션」으로 명명하고 내·외에 전시예정)
- 문화활동으로는 ‘초등학교 꿈의 미술실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 전국 6개 학교에 미술실을 시공, 일산 오마초등학교, 남양주

다. 사업기간 : 1971년 ~ 현재진행 중



<그림 15> 백남준, 하나로봇,
330 × 310 × 90cm, 2001, 하나은행본사



<그림 16> 백남준, Economic Super Highway
370 × 200, 2001, 하나은행본사

2) KAIST

가. 사업목적

- 서울캠퍼스 학생, 교직원의 정서 및 교양 함양
- 서울캠퍼스 문화행사를 홍릉연구단지의 문화행사로 발전시킴
- 미술작품 전시회는 상시 운영하고 공연행사는 정규학기 중에 운영

나. 사업내용

○ 전시내용

<표 18> KAIST 전시 내용

순서	년도	전시기간	분 야	전시회명	비 고
1	2003	10. 1 ~ 12.11	회 화	우제길, 황우철, 김원숙, 박영하 회화전	작품 2점 구입
2	2003~2004	12.12 ~ 1.15	설치미술	심영철 설치전	
3	2004	3. 3 ~ 3.23	회 화	김정현 회화전	
4	"	3.24 ~ 5.15	"	김점선 회화전	
5	"	5.16 ~ 6.30	"	신홍우 회화전	기증 1점
6	"	7. 1 ~ 8.31	공 예	하태임 미술전	기증 1점
7	"	9. 1 ~ 9.30	설치미술	강리나 미술전	
8	"	10. 1 ~ 10.31	공 예 전	강용면 공예전	
9	"	11. 1 ~ 11.30	회 화 전	박영하 회화전	
10	"	12. 1 ~ 12.31	회 화 전	진유영 회화전	

- 현재 소장품 목록 : 회화 및 설치조각 작품 4점

○ 공연내용

<표 19> KAIST 공연내용

순서	년도	공연일	분 야	공연내용	비 고
1	2003	12.14(금)	국 악	이강근의 소리무대	
2	"	12.22(월)	재 즈	이정식 서울 재즈 콰텟	
3	2004	3.18 (목)	가 요	한상원 밴드	2004학년도 신입생활영
4	"	4.29 (목)	오페라	국립오페라 합창단 초청 공연 “오페라 아리아와 합창의 밤”	
5	"	6. 8 (화)	국 악	국립국악원 초청 공연 “우리 춤과 소리”	GTMC Forum (6. 6~6. 9)
6	"	9. 9(목)	가 요	강산에 초청공연	
7	"	10.18(월)	국 악	국립국악원 초청 공연 “우리 춤”	
8	"	11.18(목)	가 요	정태춘, 박은옥 초청공연	

다. 사업기간

○ 2003년-현재 진행중

라. 지원방법

○ 전시의 경우 작가지원금은 설치비 형식으로 회화작품의 경우 지원금이 250만원이며, 설치작품 350만원 정도, 이 외 홍보용 포스터 지원

○ 2004년 소요예산

<표 20> KAIST 2004년 소요 예산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금 액
봄 학기	○미술작품 전시 4회, 공연 3회	35,000,000
가을학기	○미술작품 전시 4회, 공연 3회	45,000,000
합 계		80,000,000

3) 외교통상부

가. 사업명 :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나. 사업목적

- 재외공관의 청사 및 관저에 우수한 우리 미술품 전시를 통해 우리 문화홍보 및 문화국가로서 이미지 재고

다. 지원근거

- 외교통상부 미술품 관리규정(외교통상부 훈령 43호)
- 외교통상부 미술자문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외교통상부 훈령 제47호)
- * 외교통상부 법령정보 별첨

라. 자문위원회

- 목적 : 외교통상부 내 미술관계 업무 전반 (본부 및 재외공관 미화작업, 본부 및 재외공관 예술품 구입, 재외공관 주최 전시회, 기타 위원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함
- 설치일자 및 존속기한
 - 설치일자 : 1997년 12월
 - 존속기한 : 영구
- 위원구성 : 총 8명

- 한도룡 위원 (홍익대 명예교수, 현 미술자문위원회 명예 위원장)
- 임명진 위원 (전 대사)
- 이두식 위원 (홍익대학교 미대학장 및 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 박래경 위원 (한국문화교류 대표, 미술평론가)
- 임희주 위원 (국립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회 상임부회장)
- 이영범 위원 (이영범 건축사무소 대표)
- 박충흠 위원 (전 이화여대 조소과 교수, 현 작가)
- 김병중 위원 (서울대 동양학과 교수)

- 설치근거 : 외교통상부 미술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외교통상부 훈령 제 47호)
- 사무국 유무 및 사무국 직제근거 : 없음
- 별도의 집행예산여부 : 없음
- 의결, 심의조정, 순수자문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 : 순수자문

마. 사업내용

- 5개년 사업으로 2003년부터 매년 10여 개의 공관에 미술품 지원

바. 사업기간

사. 지원방법

- 중점 실시 공관 : 미술자문위원의 현지 공관 답사를 통해 현지에 적절한 우리 미술품 구입 지원
- 소규모지원공관 : 작품 부착할 공관 사진을 통해 미술품 구입 지원

아. 소요예산 : 연간 5억원

자. 2003-2004년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추진현황

<표 21> 2003 재외공간 문화전시장화 사업추진 현황

	공관명	지원내역	비고
1	주아르헨티나	회화 15점	
2	주이스라엘	회화 12점 / 도자기 2점	
3	주멕시코	회화 3점	
4	주이탈리아	회화 8점	
5	주이란	회화 24점	
6	주스페인	회화 4점	
7	주벤쿠버	회화 5점	
8	주아프가니스탄	회화 1점	
9	주러시아	회화 2점	
10	주인도네시아	회화 12점	
11	주베트남	회화 8점	
12	주세르비아	회화 11점	
13	주튀니지	회화 10점	
14	주폴란드	회화 37점	
15	주선양	회화 1점	
16	주광조우	회화 3점	
17	주레바논	회화 5점	
18	주시카고	회화 2점	
19	주홍콩	회화 10점	

<표 22> 2004 제외공간 문화전시장화 사업추진 현황

	공관명	지원내역	비고
1	주케냐(대)	회화 1점	
2	주네덜란드(대)	회화 9점	
3	주오스트리아(대)	회화 10점	
4	주프랑스(대)	회화 2점	
5	주싱가포르(대)	회화 14점	
6	주말레이시아(대)	회화 14점	
7	주칠레(대)	회화 4점	
8	주페루(대)	회화 10점	
9	주L.A 총영사관	회화 7점	
10	주가봉(대)	회화 4점	
11	주라오스(대)	회화 6점	
12	주보스턴 총영사관	회화 6점	
총 12개 공관		회화 87점	

3. 해외사례

<표 23> 미술은행(Art Bank) 해외 사례

국가	운영 현황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예술품수집위원회(National Art Coll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된 정부 산하기구 - 수집대상미술품은 영국작가작품으로 한정, 주로 국내 박물관 미술관에서 전시 * 영국예술진흥위원회(Arts Counc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5년 설립된 비정부기구, 7000여점 소장 *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4년 설립, 약 6만여 점의 미술품 소장 - 정부의 각종 지원과 수입금, 기부금으로 운영 - 매년 해외에서 3,000여건의 영국관련 문화행사 개최시 소장미술품 활용 - 신진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높이는데 활용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NAC(국립현대미술진흥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6년 설립, 7만 2천여 점 소장 - 국내는 물론 외국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까지 구입, 소장, 대여 - 고문위원회를 두어 구입할 작품의 제안과 결정을 하며, 위원회의 위원들은 3년마다 교체 - 해외 미술관에도 대여를 하여 자국의 문화적이미지를 높이는데 활용 * FRAC(지역현대미술진흥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년 분권화의 일환으로 설립 - 지방의 현대미술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 - 지방이사회의 협력아래 각 지역마다 존재 - 행정고문과의 합의 아래 작품구입 - FRAC의 소장품은 국가소유가 아닌 FRAC 협회에 소속(현대미술작품은 국유화 법칙에 의해 국가의 공공문화 재산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국외로 유출되거나 개인소장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ada Council of Art B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또한 별도의 Art Bank를 많이 운영 - 1972년 설립, 캐나다 정부 산하기구 - 18000여 점의 회화, 판화, 조각, 사진 컬렉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aska State : Art B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5년 설립된 알래스카 주정부 산하 문화부 - 500여점의 알래스카 지역 작가들의 작품소장 * Washington 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 DC 지역 예술가 지원프로그램 - 운반 가능한 작품으로 제한. 700여점 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stralian Art bank

1) 영국

- 영국에서 정부 혹은 정부를 대리하는 기관에서 화상이나 작가들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독립된 정부 산하 기구로서 국립예술품수집위원회(National Art Collection)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영국예술진흥위원회(Arts Council),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을 들 수 있다.
- 영국예술진흥위원회의 소장품은 주로 국내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대여하거나 전국적으로 순회전시를 할 목적으로 이용되며 영국문화원의 소장품들은 주로 해외에서 영국문화를 선전하는데 이용된다. 이 밖에도 영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문화재단이나 민간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여러 기구에서 소장품을 구입하는 특별 계획이 시행되기도 한다.

가. 국립 예술품수집위원회(National Art Collection)

- 영국 정부가 미술품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은 이미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구입하는 미술품은 16세기부터 현재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술품을 사들이는 목적은 이러한 미술품을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전시함으로써 영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영국미술의 창의성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집 대상 미술품은 영국 작가의 작품으로 한정된다.
- 수집된 작품들은 다우닝가 10번지의 수상 관저를 비롯하여 영국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외교 공관 등 수백 개의 중요한 건물에 전시된다. 정부가 수집한 미술품은 별도로 전시되는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매년 가을에 주말 공개전시(Open Weekend)라는 인접 기간의 행사를 통해 웹사이트를 동반한 다

내외의 중요한 전시에 대여되기도 한다.

- 정부는 소장품 구입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자문위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은 주로 주요 미술관의 관장들과 큐레이터 그리고 저명한 미술평론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10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은 당연직으로서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국립 초상화미술관(National Portrait Gallery), 테이트미술관(Tate Gallery)의 관장과 정부의 예술문화 담당 부서장, 그리고 국립예술품수집위원회(National Art Collection)의 대표로 구성된다.
- 자문위원회는 1년에 3회의 정기 회의를 통하여 구입 대상 작품을 선정할 뿐만 아니라 기증 또는 유증된 작품을 심의하기도 하고 정부 기금으로 작가들에게 작품제작을 의뢰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 위원회의 의견은 국립예술품수집위원회의 대표를 통해 문화부 장관에게 보고 되어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 이 자문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며 회의에 소요되는 실 경비만 제공된다.

나. 영국예술진흥위원회(Arts Council)

- 영국예술진흥위원회는 1945년에 설립된 비정부기구(NGO)이다. 위원회의 시각예술부(Visual Arts Department)에서는 매년 일정 예산을 미술품 구입에 할당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 구입한 작품들은 런던의 사우스뱅크 센터(Southbank Centre) 내에 있는 헤이워드 갤러리에서 보관과 운영을 대행하여 자체 기획전시에 활용하기도 하고 전국의 전시공간을 순회 전시하는데 이용해 왔다. 1968년에 개관한 헤이워드 갤러리는 원래 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였으며 1970년 하이드 파크 내에 서퍼타이 갤러리가 역리면서 이 두 기

- 영국정부는 문화정책의 집행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추세이므로 1988년부터는 예술위원회는 헤이워드 갤러리의 운영을 사우스뱅크 센터로 이관하였으며 7,000점이 넘는 위원회의 소장품들도 헤이워드 갤러리로 이관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영국 작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1년에 약 40점 정도를 구입하는데 구입위원회는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 위원들은 내부인 3인, 외부인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인들은 위원회의 미술부문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큐레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인사는 작가와 평론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학생들의 작품은 구입대상 작품에서 제외되며 3년 이내에 정부가 구입한 적이 있는 작가의 작품도 구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입절차는 작가가 구입을 신청하면 구입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작가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작품의 사진을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다음 단계에서 전시장이나 작가의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다.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 1934년에 창설된 영국문화원은 세계적으로 110개국에 약 220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영어와 영국문화를 외국에 선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영국문화원은 국왕의 칙령(Royal Charter)에 의해 창설된 독립된 비영리기구이지만 외무부(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 영국문화원은 1930년대 말부터 미술품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수집품은 주로 드로잉과 판화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점차 소장품의 종류와 규모가 확장되어 현재는 회화, 조각 뿐 아니라 설치미술, 패션, 디자인과 공예 작품 등 8,000여 점의 다양한 소장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써 영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문화상품과 건축, 디자인 등의 소프트웨어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 영국문화원의 미술품 수집은 테이트 갤러리와 연결되어 있다. 현재 테이트 갤러리에는 초기 영국문화원의 전시활동에 대한 카탈로그나 사진 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다. 영국문화원의 미술품 수집은 해외에서의 전시를 고려하여 수집되는데 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은 영국문화원의 한정된 예산과도 관련되는데, 작가의 초기작을 조기에 매입함으로써 구입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누리면서 젊은 작가들은 국제적으로 선전해주는 효과도 함께 노릴 수 있다.
- 영국문화원에서 수집한 미술품들은 국제적으로 순회 전시가 이루어지거나 외국 박물관과 미술관에 장기적으로 대여하여 영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이용하기도 하고 해외의 영국 대사관저와 각국의 영국문화원 등에 대여, 전시되기도 한다. 영국문화원은 소장품을 전시하는 국내의 전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외국에 대여하거나 순회전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작품들은 런던의 영국문화원 본부 사무실에 배치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상설 전시장이 없지만 영국문화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시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원하는 사람들에게 소장품에 관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있다.
- 이밖에도 영국문화원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자료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현재 영국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외국에서 전시회를 가질 경우 재정과 정보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영국문화원은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팀의 연결망을 운영하기도 한다.
- 영국문화원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베니스비엔날레와 같은 국제적 수준의 미술은행에 영국 작가를 선발하여 후원하는 것이다. 이 일은 시각예술

문 큐레이터를 고용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전시 주제에 조예가 깊은 외부의 객원 큐레이터를 초빙하기도 한다.

2) 프랑스

- 1982년 프랑스와 미테랑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문화정책의 지방자치화를 실행했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지방자치화 맥락에서 82년부터 자크 랑 문화부 장관은 현대미술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보완했다.
- 먼저 문화부의 국공립 미술관 박물관을 담당하는 미술관/박물관 관리국(Direction des musees nationaux:DMF)과 미술관 박물관을 제외한 동시대미술현장을 지원하는 예술국(Delegation aux arts plastiques : DAP)으로 분리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예술국 산하로 편입된 동시대 미술 현장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탄생했는데, 그 중 국립현대미술진흥기금(Fonds national d'art contemporain : FNAC)과 지역현대미술진흥기금(Fonds regional d'art contemporain : FRAC)은 정부의 현대미술 현장 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배려에서 비롯되었다. 국립현대미술진흥기금은 중앙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며, 지역현대미술진흥기금은 각 지역 자치제의 자체적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 국립현대미술진흥기금 (Fonds National d'Art Contemporain : FNAC)

○ FNAC 설립의의와 목적

- FNAC는 1976년에 퐁피두 현대미술관의 개관과 더불어 불란서 정부의 미술정책의 현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퐁피두 미술관의 건립은 보수적

를 예고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프랑스 정부나 미술계의 지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 FNAC은 프랑스 미술의 이러한 위기의식으로부터 프랑스 문화성이 새롭게 내세운 미술 분야에 있어서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창립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FNAC은 초기 DAP(Dlegation d'Art Plastiques : 조형예술 위원회)라는 명칭의 문화성 산하 기관에 예속되어 있었다. 이 FNAC의 설립 목적은 활발한 작품 활동과 뛰어난 작품성을 지닌 현대예술가들의 작품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 FNAC의 작품선정 분야 및 예산

① 작품심사횟수

FNAC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2차례의 작품심사를 한다. 단지 작품의 숫자나 예산상황에 따라서 2회의 정기적인 작품심사 외에 여러 차례 심사위원회가 추가로 구성되어 작품을 심사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해마다 2,000점 이상이 심사대상으로 출품되기 때문에 2회로 한정하여 모두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작품심사가 적용되는 분야

- ㄱ. 심사가 이루어지는 미술 분야 : 회화, 조각, 설치, 판화, 비디오 등의 현대미술
- ㄴ. 사진 분야 : 현대사진.
- ㄷ. 장식미술, 디자인분야 : 공예, 디자인, 기타 장식미술 계열

③ FNAC의 예산과 작품구입 상황

<표 24> FNAC의 예산과 작품구입 상황

단위 : 유로(2004년 7월 현재 1유로는 1,450원 정도)

연 도	예 산	분야별 작품구입 내역
2000	정기예산 : 3백2십만 유로 추가예산 : 8십6만1천유로	총 655작품 조형예술 : 204 / 사진 : 234 장식, 디자인 : 217
2001	정기예산 : 3백2십만 유로	총 650 작품 조형예술 : 233 / 사진 : 275 장식, 디자인 : 152
2002	정기예산 : 3백2십만 유로	총 615 작품 조형예술 : 335 / 사진 : 152 장식, 디자인 : 128
2003	정기예산 : 3백2십만 유로	총 619 작품 조형예술 : 376 / 사진 : 95 장식, 디자인 : 148
2004	정기예산 : 3백2십만 유로 (한화로 약 47억원 정도)	총 833 작품 조형예술 : 295 / 사진 : 231 장식, 디자인 : 207

④ FNAC의 예산과 작품구입 예산

FNAC의 작품구입을 위한 예산은 5~6년 단위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FNAC예산의 전액은 문화성의 산하기구인 CNAP의 예산으로부터 지급된다. 2004년 현재 FNAC의 현대미술 작품을 위한 구입예산은 3백 2십만 유로에서 한화로 약 47억원 정도이다(2000년도의 예산이 3백 2십만 유로에서 추가예산으로 8십6만1천유로가 책정된 것은 이례적인 경우).

○ 작품심사위원 구성과 체계

① 심사위원의 구성과 체계

매해 정기적으로 열리는 FNAC의 각 분야별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심사는 12~13명의 심사위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은 12~13명의 위촉대상에 대하여 CNAP(국립조형예술센터)의 현대미술분야에 관련된 담당자와 조사관 그리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담당자와 조사관에 의해서 면밀하게 조사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 모든 상황은 철저히 통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적격 대상자들이 20명가량 선발되면, 그 순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상자들의 개별 응답을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각 분야별 12~13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표 25> FNAC의 분야별 심사위원 인원

분야	인원
조형예술 분야	13 명
사진 분야	13 명
장식, 공예, 디자인 분야	12 명

이와 같이 결정된 12-13명의 심사위원회는 CNAP(국립조형예술센터)의 최고 책임자인 국립조형예술센터 원장이 문화장관에게 12~13명의 심사위원회 구성으로 매해 다음과 같은 5개 범주의 직업(직위) 사람들로 이루어지며, 각 직업(직위)별 분포비율은 거의 일정하다.

에 현대미술분야 전문가 등 총 8~9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이들의 주요 직업은 매해 약간은 변화를 보이지만 작가(2명), 비평가(1명), 컬렉터(1명)의 경우는 항상 고정적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다. 이들 8~9명의 구성 인원은 정부기관이나 조형예술센터에 소속되지 않은 철저히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 조형예술센터 원장. 총 인원 : 1명
- 조형예술센터 현대미술 조사관. 총 인원 : 1~2명
-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퐁피두 미술관 관장). 총 인원 : 1명
- 프랑스 국립 총 담당자. 총 인원 : 1명

위의 12~13명의 심사위원들의 숫자는 고정적이며 임기는 3년에 한정되어 있다. 총 인원 8~9명의 외부에서 위촉된 인사들은 3년이 지나면 모두 바뀌지만, 나머지 4~5명의 경우에는 항상 정부의 관리로서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위촉 임명되기 때문에 이 4~5명의 심사위원들은 각 분야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4~5명의 심사위원들은 각 분야별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에 중복 참가해야하는 단점도 있다. 각 분야별 외부와 내부에서 위촉되는 심사위원의 숫자는 다음과 같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② FNAC 심사위원 구성과 체제의 장단점

국립조형예술센터의 현대미술 조사기관이나 작가 등과 같은 미술현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점 등 매우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수반될 수 있다.

- 첫째로, 정권교체에 따라 국립미술관 관장의 자리 변동이 주어지면서, 임명

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의 행정주의적 편의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방향을 주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 둘째로, 심사위원들의 임기가 짧지 않은 3년이라는 점과,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명단이 심사 후에 공개된다는 점에 있어서 다양한 비리와 부패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 셋째로, 국립조형예술센터의 현대 미술조사기관의 객관적인 판단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이다. 이들의 능력이나 자질 그리고 어느 작가나 화랑을 선호하거나 밀착되어 있을 경우에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잠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심사대상이 되는 작품제출과 심사에 응모하는 방법

① 작품심사에 응모하는 방법

FNAC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심사는 전시회와 기타 발표회를 통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모든 조형예술, 사진, 장식미술 및 디자인 분야의 작가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있다. 심사대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방식이 존재한다.

- ㄱ) 작가들이 참여를 원한다면 위원회에서 정한 장소에 소정양식을 들고 FNAC에 요구하여 각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매해 정기적으로 열리는 2번의 심사위원회 중에서 한번은 자유롭게 작가들이 응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현대미술을 하는 모든 작가들에게 기회는 열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작품의 분야에 따라서 평면과 입체에 관한 작품의 크기는 규정되어 있고, 주제가 다른 작품을 2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작품을 가지

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작품접수 날짜와 응모요강 등의 세부사항을 공고하고, 미리 응모원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 나) 조형예술센터의 현대미술 전담 조사관들은 지속적으로 전시회와 작품 발표회를 참관하고 조사하여 작품심사의 대상이 될 수준의 현대미술 작가와 작품 혹은 화랑들을 선정한 다음, 그들에게 심사에 출품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한다. 물론 이들도 첫 번째 방식의 작가들이 제출하는 일정한 참여양식(응모원서)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심사대상으로 초대된 화랑이 작품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도 개인적으로 작가는 2점 이상 출품 할 수 없다. 화랑이 작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형예술센터의 현대미술 전담 조사관이 A라는 화랑에서 K라는 작가의 전시회를 보고 A화랑이 직접 K작가의 작품을 출품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K라는 작가에게 초청대장을 보낼 수도 있다. 단지 A라는 화랑에서 전시되었던 몇 명의 작가들에게 관심이 있다거나 A라는 화랑의 전시기획과 내용이 뛰어나다면 A라는 화랑 자체가 몇 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심의대상으로 출품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은 미술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재능 있는 새로운 작가발굴에 노력하는 화랑들에게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부여해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 이 두 가지 심사대상의 차이점은 첫 번째 방식은 모든 작가들에게 열려진 방식으로 작가들이 FNAC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방식은 그와는 반대로 FNAC이 작가나 화랑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② 작품제출과 응모원서

ㄱ) 작품제출

작품제출 날짜는 FNAC 위원회에서 정하여 공식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발표가 되며, 작품의 반입과 반출의 날짜도 미리 공고가 된다. 작품반입은 FNAC이 작품을 소장 보관하는 FNAC 본관에서 이루어진다. 작품의 반입과 반출은 작가나 화랑 자신들이 직접 응모하기 위한 것으로 작품제출에 관한 비용은 없다.

ㄴ) 응모자격

작품을 제출하기 위한 응모자격은 작가나 화랑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초대받는 경우 이외의 자발적으로 제출되는 작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FNAC과 조형예술 현대 미술 담당 조사관들은 직접적인 전시회의 참관이나 FNAC이 요구하는 소정양식과 기타 참가요청 경력 등을 통하여 응모자격을 검증한다. 취미나 기타 흥미 위주의 수준미달의 작품 등과 같은 비전문적인 경향의 작품들은 철저하게 배제된다고 할 수 있다.

③ 응모원서 양식과 작품제출

ㄱ) 응모원서

응모원서의 양식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모전의 양식과 유사하다. 응모양식의 내용은 작가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요약된 전시회 경력, 공공 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는지에 관한 기록, 미술관이나 기타 미술재단에 소장된 자신의 작품에 대한 기록, 전문 미술지에 기고된 자신의 작품에 대한 기록이다. 이 사항은 자신의 작품사진만이 전문지에 기재 되었는지, 자신의 작품에 대한 특별한 조명으로 이루어진 기사인지, 아니면 비평가에 의해서 조명된 전시회 비평이기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된다는 점이다. 이 기재의

는 누구인 지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사항을 통하여 심사위원회는 단지 경력에 의한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작가의 작품경향이나 작품수준의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작가의 전문적인 활동상황을 어느 정도 까지는 어렵지 않게 파악하게 된다.

ㄴ) 작품제출

작품제출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와 화랑이 하는 경우로 구분되지만 이 두 가지 모든 경우에 응모원서를 제출하며, 작품 반입에 따른 작품 반입서는 따로 써서 제출한다. 작품반입서는 작가명, 작품명, 규격, 재료, 작품가격, 취급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작품의 배열이나 설치방법의 기재) 등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작품가격에 있어서는 작가들이 화랑이나 기타 전시회를 통하여 형성된 공급가격을 기재하게 되어있지만, 그 작품을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작가의 판단에 달려있다. 그리고 화랑에서 작가의 작품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화랑이 작품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다. 단지 FNAC에서 작품을 구입할 상황에 이르렀을 때, 때로는 FNAC의 예산 상황에 따라,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작품구입 가능한 가격이 제시되어 절충되기 때문에 작품가격은 작가나 화랑과의 협의를 통하여 재조정 혹은 하향 조정되기도 한다.

○ FNAC의 구입 작품의 보관 및 작품운용

① 작품의 보관

FNAC의 보관은 파리 근교의 야외 현대조각공원이 있는 라 데팡스(La Defence)지역의 뽀토(Puteax)에 위치하고 있다. 이 본관에서 작품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입된 작품들은 이곳 4,500평방미터의 작품창고에 일련의 번호와 자료입력의 단계를 거쳐 보관된다. 이곳 작품보관창고는 미술작품을 보전하

존을 위한 온도나 습도 등 다양한 면에 걸쳐서 철저하게 계획된 전문적인 작품보관을 위한 기능을 지닌 건축물이다.



<그림 17> FNAC 수장고 내부

② 작품운용

2004년 현재까지 FNAC에 보관된 작품의 수는 공식적으로 약 70,000점이다. 숫자는 FNCE이 구입한 작품 수를 훨씬 상회하는데, 이는 구입된 작품 이외에도 많은 작품들의 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FNAC에 보관된 작품 중에는 FNAC에서 구입한 작품 숫자보다는 기증을 받은 작품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다고 하겠다. FNAC에 기증되거나 구입된 작품은 어떠한 국가의 이익이나 이유로도 판매되거나 기증되지 않는다. 일단 FNAC의 창고에 보관된 50%

회원 정부산하 공공기관, 국내외 기획 전시회 등으로 보내진다. 특히 해외 주재 대사관으로 보내지는 경우나 공공기관, 국립미술관 등으로 보내지는 작품의 경우에는 3-5년의 기간마다 새롭게 작품을 순환 시켜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FNAC에서 보관되고 있는 작품들은 공공기관이나 미술관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대중들과 만나고 있으며, 또한 해외주재 대사관이나 문화원 혹은 기획 전시회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불란서미술을 홍보하는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지역현대미술진흥기금 (Fonds Regional d'Art Contemporain : FRAC)

- FNAC이 프랑스 전역 및 국제적인 수준까지도 관할한다면, FRAC은 지방의 현대미술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이다. 1982년 실시된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프랑스 문화부는 지역현대미술진흥기금(FRAC)을 창설했다. 국립현대미술진흥기금과는 별도로 지방자치 단체들에 의해 운영되는 현대미술 작품구입 기금으로,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도가 수도에 비하여 전무한 상태였던 프랑스 지역들을 수도 권과의 문화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기금이다.
- 현재 이 기금은 프랑스 모든 지역과 프랑스령인 마르티니크, 레유니옹 섬을 포함하여 23개에 이르고 있다. 각 지역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고 각 지역의 현대미술센터나 지역 미술관에서 지역민들의 문화향수를 위하여 소장품 전시를 기획하며, 현대미술 전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이 지역현대미술진흥기금의 법적인 지위는 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상으로는 지방자치 기구의 문화국과 중앙 정부의 예술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FRAC의 디렉터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임명하며, FRAC 이사회의 임원진은 문화부를 대표하는 지방행정부의 문화담당관과 지역미술계 인사들 그리고 비평가, 큐레

- FRAC의 작품 구입 절차는 이사회 임원진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하며, 만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화부의 감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총 예산의 50%는 국가로부터, 나머지 50%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된다. 23개 FRAC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은 2000년도의 경우 60억원 정도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FRAC이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받는 구입예산은 각 지방자치부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23개의 FRAC에서 2만5천여 점에 달하는 동시대 현대미술 작품들을 구입했으며, 1천여 개가 넘는 소장품 기획 전시를 열었다.
- 23개 FRAC의 활동은 지역적 정치경제조건과 그 지역민들의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각 FRAC에 관한 상세한 활동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23개의 FRAC에 관한 개별적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 또한, 법적 지위는 사적법인(Personne morale droit privé)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맹점 때문에, 현대미술작품은 국유화 법칙에 의해 국가의 공공문화 재산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국외로 유출되거나 개인 소장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3) 캐나다 - Canada Council of Art Bank

- 1972년 설립된 캐나다 정부 산하의 Art Bank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2,500명이 넘는 작가들의 18,000여 점의 회화, 판화, 조각과 사진 컬렉션으로서 캐나다 내의 최고 규모로서 캐나다 현대미술 컬렉션을 구성하고 있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컬렉션 내의 작품을 기업, 미술관, 정부 부서에 대여하고 개인 대여가 가

가. 대여 과정(Rental Process)

- 3명의 Art Consultant 의 컨설팅으로 시작하였고 (지역담당으로 분담. 해외 렌트 까지 담당) 컨설팅은 자문 역할이며 최종 결정은 렌트 문의자에게 달려있다. 이는 컨설팅부터 설치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 준다.

① 오타와지역 (Art Bank가 위치한 근교 지역)

1. 전화 예약
2. Art Consultant가 무료로 사이트 직접 방문
3. 이메일로 이미지와 작품 제안 전송
4. 문의자가 제안 검토
5. Art Consultant와 문의자가 Art Bank 에서 미팅
6. 또 다른 제안 작품을 미팅에서 검토하는 기회 제공/ 작품 선별 마무리
7. Art Bank 직원이 현지에 작품을 설치
8. 문의자가 작은 오프닝을 여는 경우도 있음. 선택사항

② 그 외의 지역의 경우

1. 전화 문의
2. 현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있음.
3. 작품제안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전달. 일반적으로 필요 분량보다 더 많은 수의 작품 제안을 볼 수 있음.
4. 문의자의 작품 선별이 마무리되면, 설치 일정 확정.
5. 미술품 운송회사를 통하여 작품운송. 그 지역에 있는 Art Bank와 제휴 회사, 혹은 개인이 지정하는 회사가 작품 배달과 설치 진행.

③ 대여비용

작품별 대여 가격은 1년간 120~2400 캐나다 달러 정도이며 최소 대여 비용이 1년에 캐나다달러 1000달러를 넘어야 계약이 가능하다. 2년 후부터 재계약이나 새로운 작품 대여가 가능하며 컨설팅비용, 작품 준비, 설치비용은 250달러 정도에서 시작하며 대여 비용은 세금혜택이 가능하다.

나. 역사

- 설립부터 캐나다의 Art Bank 는 작가들의 수입을 지원하고,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미술과 직접적인 접촉을 유도하며, 또한 캐나다미술에 오랫동안 기여해 온 상업 화랑들을 격려하고자 하였다.
- 1972년 르 모완느(Le Moyne)는 정부기관을 위한 미술품 대여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재무성에 제안하였다. 제안한 25만 캐나다달러 예산안은 5년간 500만 달러를 책정 받음으로써 캐나다에서 가장 큰 현대미술 컬렉션을 갖추고, 최고의 미술품 대여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었다. 오늘날, 호주가 캐나다의 Art Bank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기타 여러 나라들이 유사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① 초창기

- 초창기 가장 논의가 된 문제는 대여에 적절한 작품의 구입과, 가장 중요한 '캐나다 현대미술 컬렉션'이라는 두 지점 사이의 긴장관계였다. 초기 디렉터였던 루크 롬부(Luke Rombout)는 중요한 컬렉션 구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를 위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선언, 다른 이후의 디렉터들도 유사한 의식을 공유하여 왔다.

이러한 이분법적 문제는 이민국 신장부터 5년 동안 Art Bank의 존재의 의의가

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더 이상의 정부 예산 보조를 중단하였다. 이후로 Art Bank가 독자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은 사라지고, 존재유지를 위한 책임감으로 운영되어졌다.

- Art Bank의 작품 구입에 관한 문제점들이 제시되자, 협의회는 대학교수전문가 데이비드슨 던톤(Davidson Dunton)에게 Art Bank운영에 관한 연구조사를 의뢰하였는데, 그는 “두 가지 다른 방향(렌트를 위한, 혹은 컬렉션 구성을 위한) 사이에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Art Bank는 작품의 구입과 대여에 전력을 쏟아야 하며, 대여비용은 작품구입이나 다른 서비스와 별도로, Art Bank의 운영비용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로 Art Bank는, 독자적인 컬렉션 구성을 목적으로 재무성에 의해 설립된 당시의 설립취지에서 탈피하였지만, 이후로 20년이 넘도록 구입과 서비스를 위한 수입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점차 운영비용조차도 마련하지 못했다.

② 1980년대

- 1980년대, Art Bank는 캐나다 미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가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Art Bank의 컬렉션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차세대를 위하여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주요 설치작품, 필름, 비디오 작품 구입은 작가들의 지원에 의하여 가능하였으며, 대여 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또한 본래의 설립취지도 계속 변화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Art Bank의 교육활동 영역의 확장이었다.

- 1980년대 작품 구입 정책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소장품의 몇몇 작품들은 대여가 불가능하다. 대형 설치작업, 대형 조각, 그리고 필름과 비디오는 대여용으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적 컬렉션을 만든다는 취지와 달리, 전시를 위한 컬렉션은 결코 아니었다. 동시에 작품 대여가 증가하면서 고객들은 소장 작품에

③ 1990년대 이후

- 1995년, 국회에서 문화부 예산이 잘려나가자 문화부 협의회에서는 Art Bank의 폐지를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운영비용문제는 물론, 컬렉션의 성장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었다. 즉, 유명해진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재구입해 가거나,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전혀 대여가 된 적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대중적 여론으로 인하여 이 결정은 재고되었다.

- 결과적으로 아트뱅크 초기 디렉터 루크 롬부(Luke Rombout)가 다시 디렉터로 초빙되어 운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직원 감축, 여러 프로그램 폐지, 작품 구입 프로그램 동결하였고, 더 값싼 수장고를 찾기 시작하였다. Art Bank는 이후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시작되었다.

- 이러한 여러 변화를 통해 Art Bank는 설립의 목적을 재검토하였다. 아트뱅크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경영체제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1999년 빅토리아 헨리(Victoria Henry)가 새 디렉터로 취임하고, Art Bank 위원회가 작품 구입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책임지기 시작하고, 문화부는 2002년 이후로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헨리 디렉터는 컬렉션 구성보다는 대여에 더 많은 업무를 집중시키고, 최초로 컬렉션 내 작품을 모두 새로이 분석하였다. 2800명의 작가들, 이 작가들의 딜러, 작가들의 주제 별로 분류하고, 작가과일을 모두 업데이트 하였으며, 18000여 점의 작품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새로이 가치 평가(시가 결정)를 실시하였다. 현재 \$60,000,000어치가 넘는 작품들이 있고, 전혀 대여되지 않은 작품들을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하였다.

- 동시에 헨리 디렉터는 모두 마케팅과 미디어를 이용하여, 광고 캠페인을 벌였다.

"Best works of art for your place of work." (당신의 공간에 예술작품을 대여하세요)

최초로 Art Bank 수입으로 작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다. 작품구입과정

- 기본적으로 작품 대여비를 원칙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작품 구입이 가능한 여분의 자금이 구성되는 경우에 공개적인 작품구입 제안을 받는다.

- ① The Art Bank 작품 컬렉션은 "working collection" (즉,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컬렉션,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컬렉션이라는 의미) 정부가 개인 소유사무실과 임원실의 대여를 목적으로 작품을 구입한다.
- ② The Art Bank 는 작가들에게 작품 상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작품이 소실, 도난, 수선 불가능한 손상이 되었을 경우, 혹은 Art Bank가 작품을 다른 공공 기관에 기부하는 경우, 작가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만약 작품이 약간의 손상을 입었을 경우, 작가에게 연락하여, 보수를 위한 작가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보수전문가, 컨설턴트, 작가의 입회 하에 작품의 손상이 보수 불가능으로 확인되면, 작가는 자기 비용으로 작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Art Bank에서 작품을 직접 파손시키게 된다.
- ③ 작품 목록작업(INVENTORY) : The Art Bank의 작품 복구(renewal)란, 한 번도 대여되지 않은 작품을 정리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맞는 작품을 새로이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A. Art Bank재산의 처분

- 거의 혹은 전혀 대여되지 않는 작품, 움직임이 있는 설치 작품, 위험하거나 부서지기 쉬운 작품, 너무 오래된 전기 기기 작품들, 오피스 환경에 적절하지 않

에는 연작들, 비디오 작품, 영화 등이 포함되었다.

- 이러한 작품들은 캐나다 내 작품을 컬렉션하는 기관들(미술관)을 작가가 선택하여 기부한다. 작가가 작품을 기부할 기관을 결정하면, Art Bank는 공식적으로 작품 기부 절차를 거친다.

B. 새로운 작품 구입

- 예산이 마련되면, 웹 사이트나 미디어와 우편물 등으로 작품의 구입을 고지한다. 작가와 딜러는 3년 내 제작된 작품의 슬라이드와 양식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구입위원회(The Art Bank Acquisition Committee)는 세 명의 작가, 세 명의 시각 예술 분야의 사람들 (큐레이터, 미술관 디렉터나 딜러), 두 명의 Art Bank 직원이 참가하여 작품 구입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각기 다른 관점에서 야기되는 충돌을 막기 위한 것으로 Art Bank 작품 구입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C. 구입 요건

- 작품은 Art Bank 고객들에게 대여되기 위하여 구입된다. Art Bank가 작가들에게 작품의 이미지를 인터넷 포함 홍보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구할 경우, Art Bank는 작품 목록표 내의 작품을 경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작품은 공공 작품 소장기관에 기부하고, 혹은 보존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경우 작가에게 돌려보낸다.

<구입역사>

- 2003년 3월, 150,000 캐나다 달러치의 71점 작품 구입
- 2003년 11월, 165,820 캐나다 달러의 52점의 작품 구입

4) 미국

가. Alaska State : Art Bank

- 알래스카 주정부 산하 문화부, 1975년 만들어진 Art Bank로서 500여점의 알래스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하며 주정부와 관련 사무실 등지에 대여한다.

나. Washington D.C.

- * 연방정부가 아니고 워싱턴 DC 지역 내에서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 DC 지역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운반 가능한 작품에 한하며 작품은 정부 기관의 리셉션 지역, 회의실, 임원실에 임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예술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작품이 소개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현재 지역 예술가들이 제작한 700여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 Art Bank의 한 부분은 현대 워싱턴 DC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작품들에 할당되어 있다. 도시의 연방적 모습보다, 고유한 지역 문화의 특징적 모습을 소개하는데 기여하는 작업들이 대다수이며 주제로는 이웃들, 공원, 교차로, 페스티벌, 광장, 문화행사, 도시 중심 개발, 레스토랑, 상점, 직장, 지하철 역 등이고 별도 공모제도로 작품을 결정한다.

5) 호주

○ Australian Art bank

- 호주 정부, 정보통신문화부 산하 기관으로 1980년 설립된 자립운영기관이다. 호

- 다양한 매체, 회화, 드로잉, 사진, 판화, 조각, 유리와 도자기를 포함하는 3000명 넘는 작가들의 작품 9000여점 이상을 소장하고 있으며 작품 대여시 공간에 적절한 작품의 조인과 설치까지 진행한다. 아울러, 작품 대여비용은 공기업과 개인 모두 세금혜택이 가능하다.
- 초기 설립배경은 정부 산하 미술품 대여기관으로서 호주의 시각미술가들과 공예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작가들에게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고객들에게는 최근 호주 현대미술과 공예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 호주의 Art bank는 구입이 가능한 작품을 화랑, 작가 스튜디오, 공예방 등에서 구입하고 있다. 현재 컬렉션의 가치는 호주 달러로 2천만 달러가 넘으며, 다양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 작품구입은 대체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업화랑, 아트 스페이스, 작가 운영 공간, 작가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전시를 통하여 구입하고 주로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며, 전시 초대나 갤러리, 작가의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 작가들은 언제든지 아트뱅크 큐레이팅 부서(Art bank curatorial team)로 제안서를 보낼 수 있으며, 최근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미지 자료, 이력서, 가격 리스트,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고 작품의 결정은 1년에 4차례 구입정책과 예산, 위원회의 허가에 따라 결정한다.
- 구입 작품 여건을 보면, 호주 작가, 현대미술 작업, 혹은 눈에 띄는 예술적 성취도, 신진작가나 성공한 작가들, 성별 관계없이 구입 작품의 여건을 검비하고 있다.

4. 시사점

- 해외 미술은행제도의 경우 크게 프랑스의 FNAC과 캐나다 미술은행제도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 프랑스의 FNAC의 경우 대여 목적뿐만 아니라 프랑스 작가 및 현대미술 작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소장가치가 높은 작품을 중점적으로 수집하여 수준 높은 컬렉션을 자랑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문화 이미지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상대적으로 캐나다의 미술은행제도는 대여 가능한 작품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예산 사용의 효율성 및 대여기관 및 단체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일본 및 많은 국가가 캐나다 방식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 두 가지 형태의 장·단점이 분명하여 경기도 내 미술은행제도의 시행은 어떠한 형태를 모델로 하는가에 따라 구입 작품의 대상, 장르와 대여 및 기부, 재판매 등 작품 활용에 대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경기도내 미술시장의 상황 및 창작 조건과 확충할 수 있는 예산 범위와 밀접한 연관성 아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V.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 정책수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은 현실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기적 전망과, 궁극적인 미술은행(Art Bank)제도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장기적 전망으로 나누어 보도록 한다. 그것은 현재 경기문화재단이 기획 및 관리의 주체가 되어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을 공식화하도록 하는 방안에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현대미술진흥기금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맥락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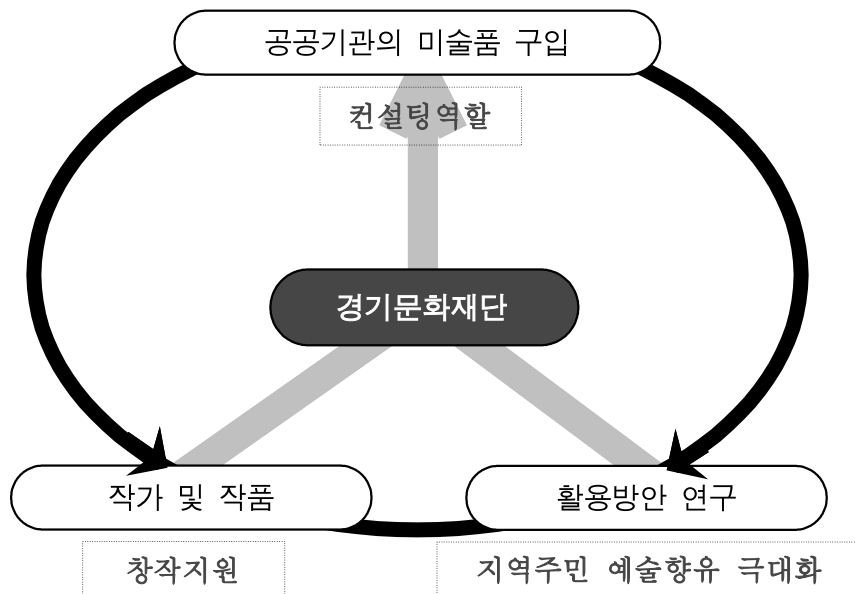
1. 단기적 전망에 따른 방안

1) 사업의 성격과 목적

- 이 방안은 기본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미술은행제도나 해외 사례와 다른 구상이다. 다시 말하면 진흥기금을 운영하여 작품 구입만을 전문적으로 하여 수장고를 두면서 작품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술은행제도는, 한편으로 현대미술의 실험적이고 새로운 경향의 작품을 구입하여 시장성을 조성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작품 구입을 공공기관이 실행함으로써 미술시장 활성화에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 무엇보다도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경기도 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공식, 비공식으로 시행되는 미술품 구입의 관행을 좀더 공식화하도록 독려하고,

기관의 미술품 구입정책을 수립한다는 의미에서 지역미술진흥 방안이 모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는 경기문화재단이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술품 구입을 해온 기존의 경기도 지역 내 공공기관과 협력 체계를 세우면서 미술품 구입과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된다.

- 이에 따라 이 사업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경기문화재단이 컨설팅 기구로서의 역할을 맡아,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을 제도화함으로써 구입을 활성화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미술시장을 간접적인 형태에서 형성하도록 하며, 나아가 구입 미술품을 전시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미술문화 향유 기회를 극대화시킨다. 그 결과 정책적 함의는 공공기관의 창작지원과 미술문화향유지원에서 확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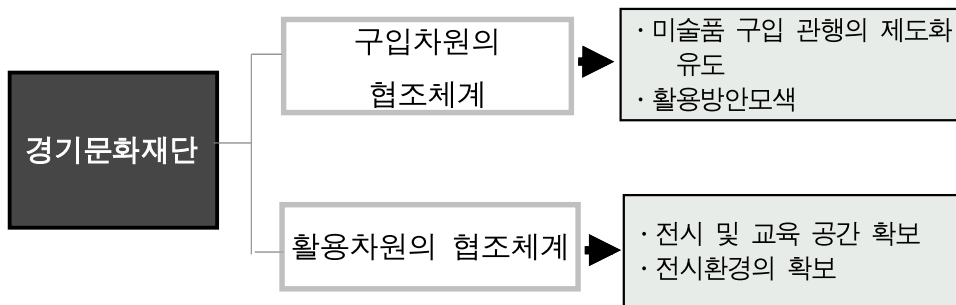


2)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개발 및 구성

- 이 사업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은 기본적으로 컨설팅 기구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일단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정책이 갖는 의의와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그러나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적지 않은 경우 미술품구입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고, 또 이를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미약한 관계로 설득을 위한 작업은 쉽지 않으리라 본다. 이에 공청회나 심포지엄의 행사를 통하거나, 도 차원에서의 행정지원을 받는 방식을 통해, 작품 구입의 관행을 공식화 혹은 정책적으로 제도화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 경기문화재단이 주체가 되어 이미 작품 구입을 실행하고 있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문화재단은 협력기관의 작품 구입을 위한 컨설팅과 진행을 맡도록 하고, 이에 준하여 작품 구입의 절차를 공식화하도록 한다.
- 단, 구입을 위한 협력 공공기관의 범위를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공사와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실태조사의 범위에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차후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장할 가능성을 전제할 수 있다.
- 경기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이 구입한 작품에 대한 관리 활용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며, 활용차원에서 다시 협력기관을 선정한다. 다시 말하면 구입 작품을 전시하거나 교육프로그램으로 응용하기 위해 또 다른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작품 구입 등의 예산 설

비롯한 다양한 활용방안은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구청 민원실이나 병원, 지하철 역사 등 대표적인 대민 서비스 공간과의 협조체계 형성도 가능하다.

- 그러나 활용차원에서의 협력체계 구성에서 전시를 위한 시설 여건을 감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시 환경의 조건을 조사하여 협력기관을 선정한다.
- 경기문화재단은 구입된 작품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전체 작품의 목록작업과 함께 이동, 재배치 등의 결정을 주도하되, 협력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이루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9> 협조체계 개발 및 구성의 틀

3) 단계별 목표사업

- 경기문화재단이 주체가 되어 미술품구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교육한다.

- 단기적 전망에 따른 사업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역할은 컨설팅 기구로 한

구성, 구입 작품 효용을 위한 행정 처리 등에 이르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의 경기도 지역 내 공공기관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계별 목표사업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 26> 단기사업의 단계별 목표 사업

단계	목표	수단	결과
1단계	- 1차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대외 홍보 작업 (목적 및 필요성 인식)	공청회, 세미나, 방문 간담회	- 작품구입 관행의 제도화 및 예산 설정
2단계	- 2차 대상 공공기관(공사중심)에 대한 대외홍보 작업 (목적 및 필요성 인식)	공청회, 세미나, 방문 간담회	- 작품구입 관계의 제도화 및 예산 설정
3단계	- 구입차원의 협력체계 구성 및 구입방안 공동모색 - 구입 미술품 관리 방안 모색	간담회 및 내부 토론회	- 재단의 컨설팅역할 합의 - 기관 자체의 관리 체계 및 공동관리 방안 합의
4단계	- 활용차원의 협력체계 구성 및 활용방안 모색	간담회 및 내부 토론회	- 다양한 활용방안 합의
5단계	- 장기적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 구성	간담회 및 내부 토론회	- 장기적 구입미술품 관리체계 합의

4) 조직 및 운영방안(안)

- 장기적으로 미술품 구입 및 활용담당부서(팀)가 필요하지만 당분간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 인원배치를 위해 담당자 1인(전문 코디네이터)으로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컨설팅 기구로서 작품 구입을 위한 자문 및 추천

지원 및 감독은 관계부서(총무팀 또는 학예팀)의 장이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따라 조직 및 기구는 코디네이터, 작품추천자문위원회, 정보은행 등으로 한정 한다.

① 코디네이터(큐레이터)

- 위상: 경기도 지역 미술은행 제도의 실무 담당자로서 유관부서에 소속
- 역할
 - 공공기관의 작품 구입을 위한 추천작가 및 작품에 대한 정보은행 관리운영
 - 작가 및 작품 추천을 위한 추천자문위원회, 심사위원회 지원
 - 작품 구입 결정권을 갖는 공공기관에 대한 의견 조율
 - 작품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성, 작품 포장 및 운송 관리 (포장 및 운송 등은 용역 활용)
 - 작품의 관계기관 순회 전시 기획, 관리
 - 도 소재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 이에 따른 제반 행정업무

② 작품추천위원회

- 위상 : 구입 대상 작품의 추천을 담당하는 외부 자문기구
- 구성 : 평론가, 작가, 큐레이터,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 운영 :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명예직

③ 정보은행

IV.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 정책수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 91

- 위상 : 경기문화재단 내 존립하는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을 위한 작가 및 작품 추천 정보기구
- 구성 : 작품추천자문위원회와 경기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되, 다양한 경로를 열어주며 객관적인 정보 확보를 위해 노력
 - 정보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구입 대상 작가 및 작품을 추천하는 작업의 많은 부분을 추천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만, 정보의 한계, 추진 작품에 대한 각종 청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로를 동시에 개발하여 추천 또는 공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보은행 구성을 위한 작품 추천 및 구입의뢰 경로는 다음과 같다.
- 작품추천위원회의 공식적인 추천
- 화랑 등 중개상의 작품 구입 의뢰
- 작가가 직접 작품 구입 의뢰
- 이 외의 다양한 경로를 보장
 - 정보은행 구성을 위한 결오에서 화랑 등 중개상의 작품 의뢰의 경우 경기지역 소재 화랑으로 한정지어 경기도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꾀한다. 물론 초기에는 화랑의 부족으로 추천 및 구입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화랑의 육성을 꾀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대상 화랑의 자격 제한을 둬으로써 무분별한 난립을 막도록 한다. 일테면 연간 기획전 개최의 횟수로 제한 할 수 있다.
- 운영
 - 기본적으로 정보은행의 역할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에 있다. 따라서, 정보은행은 협력기관의 구입 시 필요한 모든 정

- 결국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 의뢰의 경로를 경기문화재단의 정보은행으로 단일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공공기관이 작품구입의 최종 결정권을 갖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구입의 의지를 최대한 살려준다.

④ 경기문화재단 수장고 이용을 통해 협력공공기관의 미술품 보관·관리를 대행한다.

- 수장고는 작품 구입 후 관리대장 작성 및 관계기관 전시 전까지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로 별도의 수장고를 임대하거나 건립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⑤ 협력공공기관의 구입 작품을 대상으로 기획하여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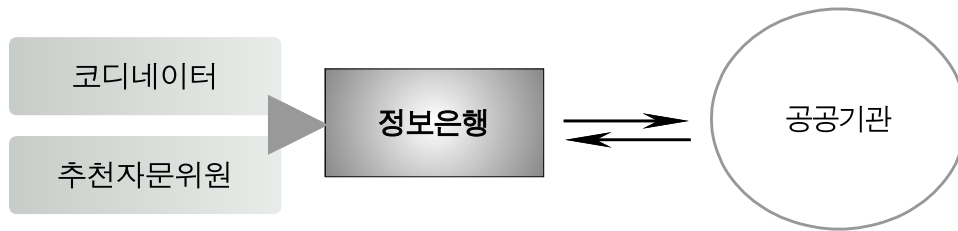
5) 구입 및 활용을 위한 운영(안)

가. 구입 운영의 기본틀

- 기본적으로 단기적 전망에 따른 사업에서는, 작품 구입을 위한 추천 정보를 갖춘 정보은행을 통해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을 제도화하도록 하는데 그 운영의 기본틀이 제시된다.

- 정보은행의 모든 자료들은 코디네이터 1인과 추천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로를 취합하여 구성하지만, 그 기준은 경기지역 작가의 창작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경기지역 미술시장 활성화에 계기를 제공하며, 또 높은 질의 작품을 구입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기지역 주민의 예술작품 향유의 기회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논리구조를 갖

- 정보은행은 상시적으로 작동되며, 상시적으로 구입이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요구에 늘 열려 있어야 한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작품 구입의 시기가 기관마다 다르고, 정례화 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정보은행의 정보 서비스는 상시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정보은행의 대전제가 되는 경기지역 작가의 창작 활성화라는 조건은 다시 세밀한 차원으로 나뉘어 그 내용에서의 정교함을 이루어야 한다. 즉 작가의 대상별 기준을 비롯하여 장르별 기준 등이 주어져야 하며, 이는 단기사업의 목표로 두기보다는 중장기사업의 목표로 두어 진행할 수 있다.



<그림 20> 구입운영의 기본틀

나. 구입 미술품 활용방안 모색

기본적으로 구입 미술품 활용방안은 경기문화재단과 구입 당사자인 공공기관과의 공동모색을 통해 제안할 수 있으며,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양자의 의견 조율과 협의는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특히 활용방안의 모색은 기획적 마인드가 필요하므로 이에 경기문화재단은 최대한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 할 기획력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에 기본적인 활용방안의 틀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 구입미술품 순회전시 방안

- 협력공공기관 간에 미술작품을 순회전시 한다.
- 경기문화재단 기획전시를 각 협력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순회전시 한다.

② 지역미술진흥 및 향유 증대를 위한 작품대여 방안

- 경기도 내 31개 시 군 공공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작품 구입에 대한 인식을 높여 간접적인 지역미술 장려를 도모한다.
- 지역주민들의 미술문화 향유를 위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한다.
- 기존에 작품 구입 등의 예산 설정을 아예 할 수 없지만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는 기반시설, 즉 도서관이나 문화원, 청소년문화센터, 그리고 여성의 집과 같은 복지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구청 민원실이나 병원, 지하철역사 등 대표적인 대민서비스 공간과의 협조체계 구성도 가능하다.
- 부처별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업마케팅을 위한 작품 대여 방안

- 개인, 기업체 등에 일정기간 동안 유상대여 한다.
- 브랜드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기업들의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비즈니스와 문화의 결합현상'을 보편화한다.
ex> 아파트 모델하우스, 기업의 각종 이벤트 등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
- 이 대여사업은 수익이 예상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기문화재단 내의 작품 구입과 공공협력기관의 구입 작품의 다양성과 질적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ex> 안산시 단원미술제의 경우 ○○기업미술상 등을 통해 기업의 문화홍보효과와 사업기금 마련의 이중 효과를 얻고 있음)

다. 작품 관리 방안

초기사업의 목표가 공공기관이 미술품 구입을 공식화하고, 이에 경로를 경기문화재단의 정보은행으로 단일화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작품 활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관에 특별한 수장고 시설이 없는 관계로 작품 보관에 대한 컨설팅도 겸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활용과 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① 구입 미술품의 관계기관에 대한 순환, 대여

- 초기에는 구입 미술품이 과다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가능하면 새로운 구입 미술품을 구입 공공기관에 전시하는 것으로 하여 관리한다.
- 그러나 한 공간에 최소/최대 전시기간을 상정하여 가능하면 작품을 순환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경기문화재단 수장고의 활용

- 필요시 경기문화재단 수장고를 이용, 협력 공공기관의 미술품 보관 및 관리를 대행한다.

▪ 효율적이고 간편한 관리 지침 마련

- 기존 작품 관리의 경우, 비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관리체계가 부실하고 분실 및 파손의 위험이 많으며, 소장 작품으로 분류할 경우 관리체계가 엄격하여 행정비용의 낭비가 예상되고 부실과 파손시 작품 가격에 비해 과도한 책임이 뒤따라 관계부서에서 관리를 회피하는 경

- 효율적인 간편한 관리 및 작품의 이동(판매 및 기증, 파손 등)에 따른 행정처리가 수월할 수 있도록 한다.
- 등급별 소장품 분류 관리지침 마련
 - 초기사업단계에서는 협조기관에 작품을 순환시켜 특별히 수장고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작품의 수량이 한도를 넘어갈 수 있으며, 또한 전시를 위한 기획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수장고 시설은 요구된다.
 - 이에 작품 분류체계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도록 등급별 분류를 해 둘 필요가 있다. 등급별 분류의 기준은 작가의 국적, 연령 등의 구분이 가능하며, 작품에서의 형식적 특성상 평면, 입체, 영상물과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 장기적으로 대여 및 판매 수익을 목표로 한 관리
 - 장기적으로는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임대 개념으로 활용하여 수익 창출을 전망할 수 있다.

2. 장기적 전망에 따른 방안 : (가칭)경기도지역 현대미술 진흥기금

1) 사업의 성격과 목적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지역 공공기관과의 체제를 이루어 공공기관의 작품구입을 제도화하고 이를 다양한 예술진흥 및 향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

- ① 프랑스의 지역현대미술기금과 유사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
- ② 작품구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구입 및 활용정책을 마련한다.
- ③ 궁극적으로 지역예술진흥과 미술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새 예술정책에서 제안한 미술은행 제도의 지역적 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2) 조직 및 운영방안(안)

가. 조직

- 초기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관계기관의 컨설팅, 자문 및 작품 구입, 관리를 대행하는 미술 정보은행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내 미술은행의 역할을 수행한다.
-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재단법인 또는 독립행정기관의 형태를 취한다.
- 중앙정부의 미술은행제도의 지역기구로 기능하되, 인구비례로 중앙미술은행의 예산을 확충한다.
- 3~4명의 전문 코디네이터 및 작품구입을 위한 작품추천위원회 및 작품구입심사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기구를 구성한다.

① 코디네이터

- 위상:
 - 경기지역 미술은행 제도의 실무 담당자로서 3-4인 전문가로 구성
 - 재단법인 또는 독립행정기관에 소속

- 역할 :

- 작품 구입 및 대여 업무
- 작품 구입추천위원회 및 작품 구입심사위원회 지원
- 작품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성, 작품 포장 및 운송 관리
(포장 및 운송 등은 용역 활용)
- 작품의 관계기관 순회 전시 기획, 관리
- 작품의 가치 평가 및 보존, 수복
- 작품의 처분(미술관 기부, 판매 등)
- 도 소재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 이에 따른 제반 행정업무

② 작품추천위원회

- 위상 : 구입 대상 작품의 추천을 담당하는 외부 자문기구
- 구성 : 평론가, 작가, 큐레이터, 실무책임자
- 운영 : 6개월(1년) 단위로 구입 대상 작품 추천,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 작품추천위원회는 간소화 시킬 수도 있다.
 - 단, 구입 대상 작품을 추천하는 것을 추천위원회에서만 담당할 경우, 정보의 한계, 추천 작품에 대한 각종 청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 또는 공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작품 추천 및 구입의뢰 경로는 다음과 같다.

- ◆ 작품추천위원회의 공식적인 추천
- ◆ 화랑 등 중계상의 작품 구입 의뢰
- ◆ 작가가 직접 작품 구입 의뢰 등 다양한 경로를 보장

③ 작품구입심의위원회

- 위상 : 추천 및 구입 의뢰된 작품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구입 작품의 선정을 담당하는 외부 자문기구
- 구성 : 평론가, 작가, 큐레이터, 화상, 도 위원(문공위), 도청 문화관광국 공무원, 실무책임자 등(화상 등 외부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력으로 구성)
- 운영 : 6개월(1년) 단위로 구입 대상 작품을 선정, 임기 2년, 연임 가능, 명예직
- 심사 : 구입 작품 심의는 1. 작품심의 2. 가격심의로 구분되며 작품심의는 목적에 맞는 작품의 질적 수준을 심의하며 가격심의는 구입가격의 적정성을 심의, 검토한다. 가격심의는 1차로 시장 가격 조사를 위해 외부 검토 의뢰할 수도 있음. 3, 5년 등 정기적으로 소장 작품의 가격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소장품의 가치를 판단하여 향후 구입 작품의 방향을 정하고, 소장품의 재판매 또는 소장가치가 높은 작품은 경기미술관 소장품으로 기증(또는 판매)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초기에는 작품추천위원회와 구입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며,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장기적으로는 작품추천위원회와 작품구입심의위원회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운영

- 초기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관계기관의 컨설팅, 자문 및 작품 구입, 관리를 대행하는 미술 정보은행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 곧 시행될 중앙정부의 미술은행제도의 예산을 인구비율로 분배받아 경기도내 미술은행제도로 독립 운영하고, 경기도 내 미술문화진흥과 경기도 작가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능하다.
- 초기에는 중앙정부의 예산과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지만, 장기적으로 대여 수익으로 자립 운영을 모색하고, 확보된 예산은 작품 구입비로만 전용한다.

(1) 작품구입정책

- 구입 작품의 대상, 장르,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제도의 성격과 목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① 구입 작품의 대상

- 경기도 내 거주 및 출신 작가로 구입 대상자를 한정
 - 경기도 미술계 및 작가 지원제도로 정착
 - 지역 미술 지원 및 활성화 효과가 큼
 - 소장품의 질적 수준 저하, 이익 창출이 어려움
 - 장기적으로 소장품의 경기미술관 기증은 가능하지만 경기미술관 내 소장품 관리 비용 증가
 - 관계기관의 만족도 낮음
 - 1점당 평균 작품구입금액 적음
- 한국 작가로 구입 대상자를 확대
 - 지역 미술 지원 및 활성화 효과가 작음
 - 소장품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음. 소장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

- 개인 및 기업에 대여 및 재판매 용이
- 미술계의 호응 및 관계기관의 만족도 높음
- 1점당 평균 작품구입금액 중간
- 해외 작가까지 구입 대상자를 확대
 - 프랑스의 FNAC처럼 세계적인 기구로 위상이 높아짐
 - 소장품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이익 창출 효과가 가장 큼
 - 1점당 평균 작품구입금액 높음
-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경기도 출신 및 거주 작가의 작품으로 구입대상을 한정시키되, 추후 예산이 증가될 경우 경기도 출신 및 거주 작가의 작품을 50% 외부지역 거주 작가의 작품을 50%로 나눠서 구입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차후 해외 작가까지 구입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있다.

② 구입대상작가의 연령

-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 신진 작가를 지원한다는 근본 취지에 다소 어긋남
 - 1점 당 구입가격 증가
 - 소장품의 질적 수준 및 가치 판단의 어려움
- 연령 제한을 둘 경우
 - 지역 중견, 원로 작가들의 불만 예상
 - 1점당 구입가격 감소
- 경기도 출신 및 거주 작가의 경우 연령 제한을 두지 않되 외부 작가의 연령은 제한(40세 또는 45세 미만 작가)하는 방법이 바람직

③ 구입 작품의 장르

- 장식적인 목적에 국한시켜 회화, 조각, 서예, 판화, 사진 등 실제 관계기관에 대여가 적합한 작품으로 구입대상을 한정시킨다.

- 캐나다 아트뱅크의 경우, 초창기에 대여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작품까지 컬렉션하다가 현재는 대여용으로 적합한 작품을 중심으로 컬렉션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여기관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처럼 대여 가능한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을 구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 전시 기관에 내방하는 도민의 만족도가 높음
- 장식적인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활용도 및 만족도가 높음
- 작품 관리 및 보관, 전시가 편리함
-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경기도내 작가에 대한 지원 효과가 한정됨
- 경기도내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비함
- 대외적으로 경기도내 아트뱅크의 영향력, 인지도 미흡

- 대여 목적 및 현대미술작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비디오, 설치, 뉴미디어 등 새로운 장르까지 포괄한다.

- 프랑스의 FNAC의 경우 자국의 신진작가를 중심으로 국내외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컬렉션함으로써, 자국의 작가 지원 효과는 물론 세계적으로 프랑스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컬렉션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소장품의 가치 상승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컬렉션을 자랑하고 있다.

- 경기도내 현대미술 작가에 대한 지원 효과가 큼
- 경기도내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큼
- 대외적으로 경기도내 아트뱅크의 영향력, 인지도 효과가 큼
- 경기도 문화 이미지 제고 효과
- 작품에 따라 관리 및 보관, 전시의 어려움 발생
- 관계기관의 활용도 및 만족도가 낮음
- 예산 대비 실질적인 효과가 낮음

- 초기에는 관계기관 및 도민의 활용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대여가 능한 작품으로 집중적으로 컬렉션을 하되, 장기적으로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여 경기도내 작가 지원 및 미술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며, 컬렉션의 수준 및 소장가치를 높여 대내외적으로 경기도의 문화이미지 제고 및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작품 활용 정책

① 경기도 소재 관공서 및 유관단체 전시

- 대여 가능한 작품을 중심으로 관련기관의 로비, 접견실, 단체장사무실, 공용 공간 등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공간을 우선적으로 전시
- 장식적인 목적 및 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작품순환 교체
- 연간 임대료는 5-7%
- 모텔하우스의 경우 월간 3-5%이나 교체주기가 2-3개월로 짧으며 사기업에서 임대시 월간 1-3%로 교체주기가 6개월 이상 될 경우가 많음, 보험료

- 초기에는 특정 관공서를 시범 사업화(예를 들어 각 시청이나 도서관 등 대민서비스가 잦은 공간을 중심으로 시행하다 차츰 전체 관공서 및 유관단체로 확대)

② 경기도 소재 공기업 및 모텔하우스에 임대

- 연간 임대료는 15-20%(월간 1-2%로 저렴한 편임)
- 5년(혹은 7년, 10년) 장기 임대시 임대가 끝나는 시점에서 사기업으로 작품의 소유권 넘김(임대 촉진 효과 및 사실상 기업에서 작품을 구입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임)
- 초기에는 공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성하여 특정 공기업의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기업의 만족도를 높여 타 공기업 및 사기업으로 확대

③ 개인 주택에 임대

-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당분간은 보류
- 도서관처럼 저가의 작품을 저렴한 비용 또는 무상으로 지역주민에게 임대함으로써 도민의 문화 수준 향상 및 소장품의 활용도를 높임

④ 기획전시를 통한 문화이미지 제고

- 우수 소장품을 선별하여 관공서, 공기업 로비 및 문화시설, 모텔하우스 등에 기획전시를 순환 개최하여 경기도의 문화적 이미지를 제고한다.
-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대여 작품과는 별도로 1개월 단위로 순환 전시하여 도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

⑤ 작품의 처분

- 소장가치가 높아진 작품은 도내 미술관에 영구 대여, 판매, 기부 등을 통해 미술관과 관객과의 연결을 높이고 경기도에 문화적 인프라 구축

고 수익금으로 새로운 작품을 구입하여 소장품의 활용도를 높임

(3) 작품관리정책

①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

- 초기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별도의 수장고를 건립하지 않고 소장 작품을 관계기관에 순환, 대여하되 필요한 경우 수장고 건립을 통해 협력공공기관의 미술품 보관·관리를 대행한다.
- 구입된 소장품은 바코드로 데이터 베이스화시키며 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작품의 이동 여부, 보존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기존의 작품 관리의 경우 비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관리체계가 부실하고 분실 및 파손의 위험이 많으며 소장 작품으로 분류할 경우 관리체계가 엄격하여 행정비용 낭비 및 분실과 파손시 작품가격에 비해 과도한 책임이 뒤따라 관계부서에서 관리를 회피하는 경향이 많음에 따라 별도의 작품관리 지침을 작성. 효율적이고 간편한 관리 및 작품의 이동(판매 및 기증, 파손 등)에 따른 행정처리가 수월하도록 한다.
- 소장품의 등급을 분류하여 등급별로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한다.

② 소장 가치 및 대여 빈도에 따른 효율적 관리

- 주기적으로 작품의 가치를 파악하여 소장가치가 상승한 작품은, 도내 미술관에 기부하거나 영구 대여할 수 있고, 다른 한편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경기도내 미술문화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거나, 수익금은 운영비용 및 다른 작품의 구입을 위해 활용한다.
- 소장가치가 높지만 대여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작품은, 국립현대미술

수익금으로 다른 작품의 구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소장가치가 낮고 대여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작품은, 작가에게 반환하고 동작가의 대여가 가능한 작품으로 교환하거나 도내 미술관에 기부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관리 비용의 절감을 모색한다.

③ 장기적으로 자립 운영 방안 모색

- 캐나다 미술은행제도의 경우 대여 수익이 점차 증가하여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
- 따라서 장기적으로 대여 수익, 소장가치가 높아진 작품의 재판매 수익 등을 통해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한다.
- 장기적으로 보관 및 관리는 외부업체에 위탁관리하거나 책임운영기관화의 방식을 취한다.
- 책임운영기관처럼 보관 및 관리비용은 대여를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 가능하며, 중앙정부 미술은행제도의 예산 및 경기도 예산은 작품 구입비로 활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V. 정책적 함의 및 전망

1. 경기도내 미술시장의 활성화

- 일반적으로 미술시장은 생산자(작가) - 중개자(화상) - 소비자(컬렉터) 등 3대 구성요소로 크게 나눌 수 있으나, 현대미술이 다양화되고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함에 따라 공적 중개자 및 소비자로서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 특히 경기도의 경우, 미술시장 자체가 인접한 서울로 인입되는 추세에서 상업적인 목적만을 중시하는 중개자(상업화랑)가 경쟁력을 갖기 힘든 상황으로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 문화 관광국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문화재단 등 경기도내 공공기관의 역할은 결코 지역 미술시장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 미술시장이 자체의 경쟁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활성화되기 위한 바탕 작업의 일환으로서, 작품의 구입(소비자의 역할) 및 구입된 작품의 관계기관 대여 및 도내 미술관 기부, 판매(중개자의 역할) 등 소비자와 중개자의 2대 구성요소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 따라서 현재 자생력을 갖지 못한 경기도내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미술은행제도의 도입은 문화 정책적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창작지원의 효과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미술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또한 이 같은 역할로 인해 미술시장의 개념이 상업화랑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를 넘어서, 일종의 공공시장의 성격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을 매개로 한 미술시장의 다양한 경로가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공공시장

2. 작가 지원을 통한 창작 의지 고취

-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작업실이 소재한 작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미술 시장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관계로, 대부분의 작가들은 인접한 서울에서 활동하거나 창작 의지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 미술은행제도는 경기도 거주 및 출신 작가에 대한 집중적, 실질적 지원 정책으로 작가들의 창작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
- 특히 기업마케팅의 일환으로 경기도 소재 기업과 지자체의 WIN-WIN 전략에 따른 기업의 미술문화지원은, 나름대로 창작 환경을 조성하여 작가들이 이탈 방지 및 도내 미술문화 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 또한 문화예술진흥지원금-기초예술 창작 발표 활동 지원만으로는 지속적, 실질적 작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 미술은행제도는 문화예술진흥지원금-기초예술 창작 발표활동 지원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 효율적,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

3. 미술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문화 환경 조성

- 경기도는 인구 대비 미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 및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각 지자체가 분산되어 있어 미술문화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도민의 교육, 문화적 수준이 매우 높아 미술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서울의 문화시설에 집중적으로 인입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건립에 비해, 공공기관에서의 미술품 전시는 생활권과 밀접한 전시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케 한다.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전시회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저렴한 예산으로 미술작품의 전시공간을 확보하는 격이 되어 생활권과 밀접한 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특히 파편화, 고립화 되어있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공공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작품 구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지역 미술 장려의 효과가 막대하게 된다. 또한 시청, 구청, 군청, 문화원, 도서관 등 대민서비스 공간에서 시각예술을 통해 문화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으며, 지역 예술의 보급과 향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이러한 조건은 지역주민들의 미술문화 향유를 위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도민의 자긍심 함양 및 문화적,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송도영 외 『프랑스 문화산업 체계』. 지식마당, (2003).

최병식 『미술시장과 경영』. 동문선, (2001).

연구과제 및 정책자료

문화관광부 “새 예술정책(시안)-시각예술분야”. 문화관광부, (200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진국의 문화예술 지원프로그램 사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경기도, (2004).

_____ “박물관·미술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_____ “한국 미술시장 유통구조 활성화 방안 : 미술시장에서 화랑의 역할 제고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992).

_____ “문화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처방안 연구: 미술시장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992).

_____ “문화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처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992).

학술지 및 세미나 자료집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문화예술경영 2004-문화예술경영과 문화예술

- 기초예술연대 “2004 기초예술연대 3차 포럼 : 시각예술분야 문화예술위원회 전
환과 새 예술정책 실천방안”. 기초예술연대, (2004).
- 한국예술경영학회 “한국 예술시장의 현황과 과제”. 한국예술경영학회, (2004).
- 오영운 “한국 기업메세나의 현황과 전망”. Art in Company, (2004).
- 조명계 “국내외 컬렉션의 현황과 전망”. Art in Company, (2004).
- 최윤석 “미술품 투자와 주식 투자의 수익률 비교”. Art in Company, (2004).
- 김재준 “한국 현대미술품의 가격의 현황과 전망”. Art in Company, (2004).

연구논문

- 박신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기반시설 건립의 타당성”. 수원예총 세미나,
(2004).
- 윤태건 “한국미술시장 탈출구는 있는가?”. 월간미술, (2004).
- _____ “알뜰한 상술과 미술의 대중화”. 미술세계, 2003. 12.
- _____ “2002 미술시장동향”. 미술세계, 2002. 12.
- 최병식 “세계의 미술품감정 제도와 한국의 개선점”. 월간미술, 1999. 9.
- _____ “한국 미술품감정의 현실과 개선방안”. 월간 아트, 1999. 12.
- 양은희 “미국/민간자본이 미국미술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 문화예술, 1999. 6.
- 오세권 “새봄과 함께 기대해 보는 미술시장의 활기”. 문화예술, 1998. 4.
- 하계훈 “영국 공공 컬렉션의 역사”. 월간미술, 2000. 9.
- _____ “새로운 미술품소장 지원프로그램 발표”. 문화예술, 2004. 11.
- _____ “해외문예소식 : 영국예술위원회, 새로운 미술품 소장 지원프로그램 발
표”. 문화예술, 2004. 11.
- 박우찬 “미술시장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도시 문화복지 27호,
1997. 12

학위논문

- 김홍남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경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현숙 「국내 아트페어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문중연 「한국 미술시장을 위한 미술품 경매의 운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민소영 「한국 화랑의 기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소영. 「한국 미술시장의 발전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신영선 「작품 유통구조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지현, 「미술품 유통경로 상에서 경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현희 「기획력 강화를 통한 한국 아트페어의 활성화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화순 「인터넷 미술품 경매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임금희 「유통시장 개방화 시대의 한국미술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임성원 「한국 미술품 유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임재광 「미술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Art Fair Expo” 참여 작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전용석 「서구 미술시장의 구조분석 : 문헌자료를 통해 본 미술시장 정보의 분포와 유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정병표 「미술품 가격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정혜선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조영화 「한국 미술품 경매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의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허경혜 「미술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관련링크

미국 Washington D.C.

- <http://dcarts.dc.gov/dcarts/cwp/view,a,3,q,527950.asp>

캐나다 Canad Council of Art Bank

- www.artbank.ca/About/default.htm

프랑스 FNAC

- www.fnac.culture.gouv.fr/fnac/specific/index.html

호주 Australian Art Bank

- www.artbank.gov.au/about.html

부 록

부록 1 외교통상부 미술품관리 규정

부록 2 외교통상부 미술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부록 3 정부미술품 미술품보관관리 규정

부록 4 정부미술품 관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부록 5 경기도 내 공공기관 미술품구입 현황 및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1

법령 정보

제 목 : 외교통상부 미술품 관리규정

담당부서 : 홍보과

제정 1997. 10. 13 외무부 훈령 제 234호

전면개정 2003. 1. 2 외교통상부 훈령 제 4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부(외교안보연구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소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통상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이 규정상의 미술품은 본부 및 재외공관이 구입, 수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존 및 관리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판화 포함),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보존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이상인 미술품을 말한다.

제3조 (관리책임자)

① 본부 미술품은 각실·국 및 외교안보연구원이 각각 관리한다. 각실·국장 및 외교안보연구원장은 과장급 직원 중에서 미술품 관리관을 지정하고, 소

능력을 구비한 자를 미술품 관리 담당자로 선정하여 미술품을 관리하도록 한다.

- ② 본부 미술품중 장·차관실, 회의실 기타 공용장소의 미술품은 홍보과가 관리한다.
- ③ 장관공관 미술품은 본부 총무과가 관리한다.
- ④ 재외공관 미술품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재외공관장은 공관 차석 또는 참사관급 직원 중에서 재외공관 미술품 관리관을 지정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미술품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미술품 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한 자를 미술품 관리 담당자로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⑤ 홍보과장은 외교통상부 본부 및 재외공관 미술품의 총 관리관으로서, 외교통상부 미술품 관리대장의 작성, 관리, 보고 기타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 (관리대장 비치)

- ① 본부 및 재외공관의 미술품 관리관(이하, 미술품 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관리대장에 등재한 미술품은 A4 용지 크기의 사진과 함께 특성 등 주요 이력을 첨부하여 현품과 대조 확인이 가능하도록 등재되어야 한다.
- ③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아 관리하는 미술품과 신규 취득한 미술품에 대하여도 前2項을 준용한다.

제5조 (보고)

- ① 미술품 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 현황을 점검하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미술품 증감현황 통보서'에 따라 익년 1월말까지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장에게 통보한다.

- ③ 미술품 관리관은 미술품의 도난,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구입)

- ① 본부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대상, 가격 및 구입처 등에 대하여 미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 ② 재외공관장이 현지에서 미화 500불 또는 원화 50만원이상의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사전에 본부의 승인을 받고 외교통상부 미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제7조 (위치 변경)

- ① 미술품을 관리대장에 등재된 위치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술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미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치가 정해진 미술품의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처분 등의 제한)

- ① 재외공관장과 미술품 관리관은 관리중인 미술품을 임의로 불용처분·매각·양여·폐기할 수 없으며, 처분·매각·양여·폐기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함께 사전에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부의 승인을 얻어 불용 처분된 미술품의 경우, 공관장의 재량으로 직원이나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여예술품 목록은 비소모품 대장에 포함시켜 유지한다.

제9조 (명제표, 작품설명서 부착)

- ① 미술품 관리관은 보관 관리중인 미술품의 작품명, 작가명, 취득일자 등이 기재된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제표를 미술품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② 미화 500불 또는 원화 50만원이하의 미술품과 복제품은 제2조의 미술품과 관리상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제표(공관에서 임의 제작)에 「비소모품」 또는 「복제품」 으로 명기하고 비소모품 대장에 포함 시켜 관리하며, 이러한 미술품과 복제품에 대하여는 정부 비소모품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 ③ 재외공관장은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해 필요시 작품설명서의 부착을 본부에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대하여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는 미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작품설명서 제작을 지원한다.

제10조 (수선)

미술품 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표구같이, 수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 수선방법, 절차에 관하여 지침을 받아야 하며, 미술품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손망실 처리)

- ① 미술품 관리관은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는 미술품 관리관이 관계법령상의 미술품 관리 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 (수복)

- ① 미술품 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는 소관 미술품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폐기 처분할 수 있다.
- ③ 제10조, 제11조 및 前2項의 조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반드시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인계인수)

- ① 재외공관장 및 미술품 관리 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인계자는 현품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미술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며, 관리대장 등 관계 서류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인수자는 인수인계서가 실제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며, 미술품 관리대장과 현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즉시 본부(미술품 총 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前2項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인계자 또는 인수자는 변상 등 소정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기록 보존)

이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과 전산기록 및 미술품 인계인수서 등은 영구 보존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재외공관이 취득한 미술품도 이 규정에 의해 관리한다.

제 3조 (관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미술품은 비소모품 관리규정에 의해 관리한다.

제 4조 (적용) 기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을 적용한다.

부록 2

법령 정보

제 목 : 외교통상부 미술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담당부서 : 홍보과

제정 1997. 10. 13 외무부 훈령 제233호

개정 1999. 7. 1 외교통상부 훈령 제11호

개정 2000. 11. 1 외교통상부 훈령 제17호

개정 2003. 2. 7 외교통상부 훈령 제47호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외교통상부가 미술관계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미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7. 1>

제2조 (기 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 ① 본부 및 재외공관 미화작업
- ② 본부 및 재외공관 예술품 구입
- ③ 재외공관 주최 전시회
- ④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3조 (구 성)

- ① 위원회는 12인 이내의 위원(여성위원 2인 이상 포함)으로 구성하며 외교통

-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 각 부문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홍보과장으로 한다.

제5조 (임 기)

-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 ② 임기중 위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시작한다.

제6조 (위원회 소집)

-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업무성격에 따라 기획관리실장이나 문화외교국장은 위원회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의무사항)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위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여비, 수당 등)

- ①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위원의 국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 체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외여행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공무원 1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과 문화외교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2000. 11. 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임위원의 임기)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제5조 ①항의 임기를 초과한 현임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에 따른 신임위원의 위촉일부로 종료한다.

부 칙 <2003. 2.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3

조달청고시 제2000-4호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 개정

물품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조달청고시 제1997-8호(1997. 11. 7)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고시합니다.

2000년 7월 29일
조 달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도난·망실·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에서 말하는 미술품의 범위는 국가기관이 구매(자체제작 포함), 수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존 및 관리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판화 포함),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보존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이상인 미술품을 말하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장되어 별도의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미술품은 제외한다.

제3조(시행) 이 규정의 시행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절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미술품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비치(게재)장소 변경 등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작품의 표구는 미술품의 장기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표구갈이를 할 때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미술품의 보유량, 크기, 작품가치에 따라 각 관서의 실정에 알맞게 취급 요령 등 구체적인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한다.

제4조(관리대장 비치 및 자료 보존) ①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등재한 미술품은 “관리대장 등재필” 표지(관리번호 부여)를 붙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관리대장에 등재한 미술품은 사진과 함께 특성 등 주요이력을 첨부한 사진첩(앨범)형태로 관리하여 현품과 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물품관리관은 타인소유 미술품 또는 리스형태로 보관하는 미술품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소유 미술품과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리스물품” 등으로 표시하여 관리한다.

제5조(인계인수) 물품관계공무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인계 인수서에 미술품의 내용을 명시하여 현품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후 관리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재물조사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

황통보서에 의하여 익년 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 제126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재물 조사시에 소관 미술품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경유하여 조달청장에게 통보할 경우 그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① 조달청 내에 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관리에 필요할 경우 조달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거나 소관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감정 또는 자문에 따른 수수료 등은 요청기관에서 부담한다.

제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 전문 관리기관에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 ② 물품관리관은 기증받은 미술품의 경우 기증자의 미술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보존 또는 보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단가 1백만원이상인 미술품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미술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조달청장은 미술품 수복을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10조(물품관리법 적용) 이 규정에 의한 미술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3조의 물품의 관리기관에 관한 규정과 법 제30조의 보관에 관한 규정, 법 제45조 및 제46조의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과 손망실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미술품 관리대장

보유기관명 :

(단위 : 천원)

부 문 별	관 리 번 호	작 가 명	작 품 명	크 기	취 득 일 자	취 득 사 유	작 품 가 액		특 기 사 항	관 리 자 확 인
							취 득 가 격	추 정 가 격		

※ 특기사항란에는 작품의 제작년도, 재료, 기타 특징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미술품 증감현황 통보서

보유기관명 :

(단위 : 점, 천원)

부문별	전년도말		본년도중 증감현황						본년도말	
	현재		증가			감소			현재	
	보유 량	금 액	보유 량	금 액	사 유	보유 량	금 액	사 유	보유 량	금 액
한국화										
서양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기타										
계										

※ 사유란에는 구입, 수증, 관리전환, 양여, 손망실 등으로 기재

부록 4

정부미술품 관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조달청훈령 제977호(1997. 9. 1)
개정 조달청훈령 제1110호(2000. 7.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따라 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본 위원회는 조달청 본청에 두며, 조달청장이 임명하는 미술품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조달청차장으로 하며, 물자비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물자관리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3조 (직무)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자문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① 정부보유 미술품의 관리유지 및 발전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정부보유 미술품과 관련되는 질의·해석에 관한 사항
③ 작품에 대한 감정시 그 감정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미술품관리 및 보존에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자격)
자문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해당분야 작품에 대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고 작품가액을 감정할 수

- ② 미술품 관련 분야에서 수년간 활동경력이 있는 자
- ③ 전·현직 공직자로서 예술품이나 문화재 등 관련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
- ④ 정부 미술품관리 자문위원으로서의 상당한 품위를 지닌 자

제5조 (위촉)

- ① 자문위원은 전체 15명 내외로 하되, 7개의 대상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 ② 대상 분야별 자문위원(붙임 #1)을 선정하여 일괄 위촉한다.

제6조 (위촉기간)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대상 분야)

자문위원의 위촉 대상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고미술 : 글씨, 그림, 도자기, 민속(토속)품 4개 분야
- ② 현대미술 : 한국화, 서양화, 조각, 3개 분야

제8조 (자문의 절차)

- ① 조달청장은 정부보유 미술품의 관리유지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문 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미술품을 보유한 관서의 장은 조달청장과 협의를 거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자문의 요청을 받은 자문위원은 자문사항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서 제

제9조 (감정 방법)

작품의 감정방법은 지참감정과 출장감정으로 구분한다.

- ① 지참감정이란 미술품을 보유하는 자(기관)가 이를 지참하여 행하는 감정을 의미한다.
- ② 출장감정은 자문위원이 미술품의 보유 장소에 직접 출장함으로써 행해지는 감정을 말한다.

제10조 (자문수수료 등)

- ①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자문내용의 경중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 ③ 작품감정에 따른 소요경비(출장료, 감정료 등)는 감정을 의뢰하는 기관(작품보유기관)에서 부담한다.
- ④ 출장감정시 출장위원에 대한 소정의 출장료는 따로 부담한다.
- ⑤ 작품감정에 따른 감정료는 관련협회에서 정한 기준(붙임 #2)을 참조하되 필요시 관련협회와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부록 5

2004 경기도 내 공공기관 미술품구입 현황 및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서의 미술품구입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방안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문화재단 주관아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술인회의 정책연구센터가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조사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니,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설문지는 2004년 9월 25일까지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거나 아래의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9월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
미술인회의 정책연구센터

미술인회의 정책연구센터

(110-31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극동빌딩 306-1호

(전화: 02-961-9211 팩스: 02-962-3294)

* 해당사항에 (○)로 체크해주시요.

1. 귀 기관에서는 올해 미술품구입과 관련한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까?

___ ①예 ___ ②아니오

1-1. 만일 예산편성이 되어있다면, 미술품구입 관련 예산은 전체 문화예술관련 예산 중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_____ %

2. 귀 기관에서 현재까지 미술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___ ①예 ___ ②아니오

2-1. 만일 있다면, 정기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___ ①예 ___ ②아니오

3. 귀 기관에서 미술품구입 사항과 관련한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___ ①예 ___ ②아니오

3-1. 만일 있다면, 담당부서명 및 담당자를 기재해주시요.

담당부서명: _____ 담당자명: _____

4. 어떠한 경로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셨습니다습니까?

___ ① 화랑

___ ② 아트컨설팅

___ ③ 작가

___ ⑤ 기증

___ ⑥ 기타()

5. 귀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은 몇 점입니까? _____ 점

6. 미술품을 주로 소장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___ ① 민원실

___ ② 사무실 및 회의실

___ ③ 로비

___ ④ 창고

___ ⑤ 기타()

7. 소장한 미술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___ ① 전시(관내)

___ ② 대여

___ ③ 기타()

8. 주로 어떤 장르의 미술품을 구입 하셨습니까?

___ ① 조 각

___ ② 서 예

___ ③ 도자기

___ ④ 회 화

___ ⑤ 영 상

___ ⑥ 사 진

___ ⑦ 기 타()

9. 미술품을 구입하실 경우 지역작가(경기도거주 혹은 활동)의 작품을 구입하시겠습니까?

___ ①예 ___ ②아니오 ___ ③기타 ()

기 관 명	
대표자성명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팩 스	
홈 페이지	
이 메 일	
응 답 자	성 명 :
	직 책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답변해주신 응답은 향후 문화예술발전정책을 개발하고,
경기도 내 예술 문화 창작 활성화 및 지역인들의 대민서비스 기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경기문화재단 기초연구 2004 - 05
경기도내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과
활용에 관한 연구

발 행 일 2005년 12월 31일
발 행 인 송 태 호
발 행 처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tel: 031-231-7200 fax: 031-236-0283
www.ggcf.or.kr
인 쇄 디자인하우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문화재단
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